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법학석사 학위논문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Force against Foreign Ships for
Maritime Law Enforcement at Sea

지도교수 이 용 희

2010年 2月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 사 법 학 과

정 희 제

본 논문을 정희제의 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위원장 정 영 석 인

위 원 정 대 인

위 원 이 용 희 인



2009년 12 월 23 일

한 국 해 양 대 학 교 대 학 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 법집행권의 국제법적 근거 및 국내적 수용태도	7
제1절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및 해상 법집행권의 내용	7
1.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의 일반론	7
2. 해상 법집행권의 내용	13
제2절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 법집행권의 국제법적 근거	14
1. 전지구적 협약	15
가. 유엔해양법협약	15
나. 공해어업이행협정	19
다. SUA협약 및 개정 SUA협약	21
2. 지역적 대응체제	25
가. 해적방지를 위한 대응체제	26
나. 해상테러방지를 위한 대응체제	28
다. 공해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대응체제	29
제3절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 법집행권의 행사를 위한 국내입법태도 ·	31
1. 관할해역별 입법례	32
2. 목적별 입법례	34

제3장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정당성 분석	37
--------------------------------------	----

제1절 해상 법집행조치로서 무력사용의 필요성	37
1. 해상 불법행위의 폭력성	37
2. 혐의선박의 불응 및 저항	39

제2절 해상 법집행조치로서 무력사용의 국제법적 근거	40
1. 유엔해양법협약상 법집행조치	41
2. SUA협약상 법집행조치	50
3. 공해어업이행협정 및 지역수산기구에 의한 법집행조치	51

제3절 해상 법집행조치로서 무력사용의 성격	52
1.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53
2.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력사용과의 구별	57
3. 해상 법집행조치로서 무력사용의 국제관습법화 여부	67

제4절 소결	70
--------	----

제4장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요건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72
---	----

제1절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기준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및 국제법적 태도 분석	72
1. 법집행시 무기사용의 기준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73
가. 경찰관 직무집행 시 총기사용에 관한 입법례	73
나. 해상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입법례	79
다. 소결	81

2.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태도	82
가.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	82
나. 법집행 공직자의 행동강령	84
다. 법집행공직자의 무기사용에 관한 유엔기본원칙	84
라. 소결	86
 제2절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사례 분석	87
1.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으로 인한 외교 분쟁 발생 사례 분석	87
가. 국적불명선 ‘長漁 3705’호 침몰사건	87
나. ‘Fuyuanyu 132’호 나포 사건	88
다. 기타 사례	89
2.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제3자적 해결 사례 분석 ...	90
가. I'm Alone호 사건	90
나. Red Crusader호 사건	92
다. 제2차 사이가호 사건	94
3. 소결	102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103
 제5장 결 론	107
 참고 문헌	111
Abstract	121

표 목차

표 1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현황	2
표 2 중국어선 단속 시 과격 저항 사례	3
표 3 지역별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발생현황	37
표 4 최근 10년 간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발생 현황	38
표 5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공격 유형	3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난 2008년 9월 23일과 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들에 의해 우리나라 해양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우리나라 해양경찰관들이 검문을 위해 고속단정 2척을 타고 해당 중국어선에 접근하자 중국 선원들이 거세게 저항하며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담겨있었고, 특히 중국선원 2명이 사망한 해양경찰관을 바다 쪽으로 밀쳐내는 과정에서 삼으로 머리를 3, 4차례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¹⁾ 그 후 우리나라 단속 경비함은 2008년 9월 26일 오전 10시경 추격 15시간 만에 당초 사고 현장 서북쪽 100km 해상에서 해당 중국어선을 나포하였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배 외부에 국적이나 선명이 표기돼 있지 않았다. 중국인 선원 11명 전원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구속되었고, 우리나라 정부는 동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불행한 사건의 발생에 대해 중국 정부를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중시해 나름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 그 동안 해오던 불법 조업 근절 교육을 앞으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사건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에 대하여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법집행조치를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UNCLOS, 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함)」에 의해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과 무

1) 인터넷 동아일보, 2008년 9월 29일(방문일: 2009년 2월 21일).

생물자원 등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며, 인공섬, 해양환경의 보호 및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²⁾ 또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동 협약에 부합되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연안국에 인정하고 있다.³⁾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에 대해 취한 단속 조치는 국제법상 우리나라에 부여된 권한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권의 행사였으나,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중국 선원들은 이러한 조치에 불복하고 폭력적으로 저항하여 단속에 나선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오히려 부상을 입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이후 꾸준히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외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고 있고, 중국어선이 그들 중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있다.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해경에 의해 나포된 중국어선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534척과 508척으로, 일본 및 기타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현황⁴⁾ (단위 : 척)

구 분	총 계	나 포			훈 방
		NLL	EEZ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06'년	534	50	127	332	25
07'년	508	56	79	359	14
대비	-26(5%)	6(12%)	-48(38%)	27(8%)	-11(44%)

2)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3) 상해협약 제73조.

4) 「해양경찰백서」, 해양경찰청(2008), 66쪽.

한편, 나포를 피하기 위한 중국어선의 수법은 점점 더 과격하고 지능화되고 있으며, 단속을 위한 해양경찰 및 해당공무원의 법집행과정에서 무장한 선원들의 폭력저항사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중국어선 단속 시 과격 저항 사례5)

연 번	일 시	저항 내용	피 해	조 치
1	2006. 8. 15 16:00 경	인천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이 소청도 남동방 11.5마일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과정 중 선원이 쇠파이프를 사용하며 저항	-	특수공무집행 방해 3명 구속
2	2007. 8. 16 14:55 경	인천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이 소청도 남서방 49마일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과정 중 선원이 목봉·갈고리를 사용하며 저항	경찰관 1명 부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7명 구속
3	2007. 8. 27 18:30 경	인천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이 소청도 남서방 48.5마일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과정 중 선원이 쇠파이프를 사용하며 강력 저항	경찰관 1명 부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6명 구속

실제로 2002년 이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17건에 이르는 폭력저항 사례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해양경찰관 31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또한 2008년 해양경찰관 사망사

5) 상계서, 67쪽.

6) “중어선 단속 해경 6년간 31명 사상”, 인터넷 헤럴드경제, 2008년 10월 6일자(방

건 이후에도 중국어선 선원들의 폭력저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이라는 공간을 크게 국가관할해역(national jurisdiction)과 국가관할외측해역(beyond national jurisdiction)으로 구분하여, 해상에서의 사건과 물건 및 사람에 대한 연안국과 기국의 권한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⁸⁾ 이들 공간들은 다시 그 이용의 목적·기능별로 복잡하게 구분되어,⁹⁾ 과거 영해와 공해로 단순히 구분되었던 해역이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군도수역, 공해, 심해저 등으로 세분화되고 각각의 공간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에 따라 국가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약 및 지역기구, 그리고 기타 기술적 예방수단 등에 의해서도 각국은 국가관할해역과 예외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타국 선박에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관할외측해역에서도, 특정한 행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특히 집행권의 내용으로는 법령위반선박 또는 법령위반협의를 있는 선박에 대한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정선(stopping), 승선(boarding), 검색(inspection) 및 나포(arrest), 그리고 필요한 조치의 행사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앞선 우리나라 해양경찰관 사망 사건에서의 경우처럼,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순순히 응하지 않고 해당 외국선박이 법집행조치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무기의 사용 및 폭력 행사 등을 통한 저항을 하는 경우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 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요한 국내 및 국제적인 법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제법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

문일: 2009년 1월 19일).

7) 2008년 11월 24일 낮 12시 30분경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유자망 어선의 선장이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 순경의 왼쪽 허벅지를 나무재질의 둔기(길이 80cm, 직경 3.5cm)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중국어선은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며 달아나다가 같은 날 12시 40분경 추격에 나선 해경의 고속 단정에 의해 나포되었다.

8) D.P. O'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II(New York: Oxford Press, 1984), p. 733.

9) 山本草二, 최홍배 역, 「海洋法」(국제해양법학회, 2002), 65쪽.

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유엔’이라 함)헌장」 및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군사력의 행사로 이해되는 무력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서 사용된 무력이 적법한 조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행위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즉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력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 정당한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 인정받은 무력사용이라 할지라도 기국의 관할권이 존재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이 불법적이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해당 법집행국가와 기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¹⁰⁾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허용성 및 그 범위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¹¹⁾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살펴본 해양경찰 사망사건과 같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에 대하여 중국어선 선원들이 무기류를 사용해 저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외교적 문제로 인하여 해당 선박 및 선원들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해상 법집행과정에서의 무력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및 정도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허용여부 및 범위에 관한 고찰을 주목적으로 하여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발생하는 유사사례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력사용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무력사용의 성격을 분석하고, 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사용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및 국제법의 태도를 바탕으로 무력사용의 기준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사례의 분석

10) I.A.Sheare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the Law Enforcement Roles of Navy and Coast Guard in Peacetime",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71(1998), p. 430.

11) 이용희,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해사법연구」, 제21권 제1호(2009), 129쪽.

을 통하여 그 범위를 정리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대응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해상 법집행과정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허용여부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유사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을 그 논의의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1장 서론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논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해상 법집행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해상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권의 행사를 위한 국제법·국내법적 근거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해상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근거로써 국제법상 해상에서의 법집행조치의 내용을 살펴본 뒤, 국제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력과의 비교를 통해 해상 법집행조치로서 무력사용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의 태도와 관련 국제사례 등의 분석을 통하여 무력사용의 기준 및 허용범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 종합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본 연구는 유엔해양법협약 등의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의 규정, 그리고 국내외 국제법 관련 책과 논문, 관련 국제 판례 내용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한다.

제2장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 법집행권의 국제법적 근거 및 국내적 수용태도

제1절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및 해상 법집행권의 내용

관할권 또는 법집행권이라는 용어는 모두 다의적인 개념이다. 해양에 관련된 종합적인 국제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상에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관할권(jurisdiction)’이라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관할권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주권(sovereignty)’ 또는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공해상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권’ 또는 ‘추적권’의 경우처럼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법집행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 법집행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권 내지 집행관할권의 의의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의 일반론

가. 국가관할권의 의의 및 분류

(1) 국가관할권의 의의

예로부터 국제법은 국내관할사항(matters of domestic jurisdiction)을 주권에 유보된 분야로 보아 실질적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회피하여 왔으며, 따라서 국가의 재량이 넓게 용인되어 그 일차적 집행이 국내법에 맡겨져 있었다.¹²⁾ 국가들 역시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집단으

12)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서울: 일조각, 2003), 181쪽.

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에서 영토에 있어서의 독립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독립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점차 조직화 되면서 주권국들은 서로 협력과 조화를 통하여 관할권이란 개념을 만들었다.¹³⁾ 또한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고 국가관할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국가관할권의 범위확정을 위한 기준설정과 배분문제,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의 기능이 강조되어 왔다.¹⁴⁾

본래 관할권이란 모든 종류의 사법적 행위와 그 권원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으로써 협의로는 재판부가 특정사건을 심문하거나 사법적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¹⁵⁾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은 일반적으로 그 국가의 영역, 국민, 재산 등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하여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이는 국가주권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어, 당해국의 입법, 행정 혹은 사법부의 작위로 규율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다.¹⁶⁾ 다시 말해 국가관할권이란 “한 국가가 사람, 사건, 물건 혹은 자원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¹⁷⁾ 과거에는 이러한 관할권이 단순히 영토를 의미하는 것으로만 이해되었으나, 실제로 관할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 지고 있다.¹⁸⁾

(2) 국가관할권의 분류

관할권의 유형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이 주장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

13) 김성희,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 독점금지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7, 4쪽.

14) 이병조·이중범, 전거서, 181쪽.

15) J. R. Nolan (ed.), *Black's Law Dictionary*, 6th (USA: West Group, 1991), p.594.

16) 김정건, 「국제법」(서울: 박영사, 2004), 323쪽.

17) 김대순, 「국제법론」(서울: 삼영사, 2009), 376쪽.

18)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4), p.109.

할권은 그 기능에 입각하여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과 집행관할권(enforcement jurisdiction)으로 구분된다.

입법관할권이란 국가가 입법부의 행위·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재판소의 선례 등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등의 법규범을 선언하는 힘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입법관할권에 의하여 법규가 제정되면 국가는 제정된 법규를 실제 사건에 집행(적용)하는데, 국가가 자국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능을 집행관할권이라 한다.

보통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법령의 입법, 재판, 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을 정립·적용하고, 법의 구체적인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권한을 가리키는 것을 이해된다.¹⁹⁾ 이처럼 집행을 동반하지 않는 입법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입법관할권은 궁극적으로 집행관할권에 의존한다. 그러나 집행관할권은 모든 경우에 입법관할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관할권 없이도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²⁰⁾

나. 국가관할권의 한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내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관할권을 가진다. 이러한 입법관할권은 통상적으로 주권국가내의 모든 사람·물건·사건 등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어떤 국가가 자국의 영토 외까지 확대하여 입법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이로 인해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도 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국내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관할권은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국

19) 山本草二 編, 海上保安法制(東京: 三省堂, 2009), 178쪽.

20) 즉, 외국적 요소(foreign elements)가 있는 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외국의 사법규정을 준거법(law applicable)으로 하여 재판한다거나 외국의 민사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외국의 중재판정에 대해 승인과 집행을 허락할 수도 있다. 박세용, “국제법상 형사집행관할권 행사의 보완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08, 5쪽.

가들이 자국 입법관할권의 역외적 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들로 인하여 그 한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입법관할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통상적으로 자신이 제정한 법규를 자국 영토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집행관할권은 입법관할권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영토적 제약성을 갖는다. 즉,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범인이 타국에 있을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그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타국에 자국의 경찰을 파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 국가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국가관할권의 이론적 기초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속지주의, 속인주의, 수동적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 등 다섯 가지이다. 이들은 모두 국가관할권의 역외적 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1)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국가가 자국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행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사안의 발생장소를 기준으로 관할권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국제관습과 조약에 의해서 확립된 것으로 국가의 영토주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다.²¹⁾ 그러나 속지주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자국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관한 정의는 그리 명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속지주의는 주관적 속지주의원칙과 객관적 속지주의원칙으로 다시 구분된다.

주관적 속지주의원칙(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이란, 행위의 개시를 중심으로 하여 범죄가 A국에서 시작되어 B국에서 완성되었을 때, A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국가가 관할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어디에서 완성되었는지 또는 행위의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21) 이병조·이중범, 전거서, 183쪽.

에 관계없이 그 국가 내에서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²²⁾

이에 반해 객관적 속지주의원칙(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이란, 행위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에서 B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행위가 특정국가 내에서 완성되거나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질서에 심각하고 해로운 결과를 끼쳤을 때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이다.²³⁾

(2) 속인주의(nationality or personality principle)

행위의 장소에 관계없이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원칙으로, 이에 따르면, 자국민에 의해 행해진 외국에서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속인주의 원칙은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대인주권(personal sovereignty)에 기초를 두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는 반면,²⁴⁾ 영미법계 국가들은 속지주의 원칙으로 하고 반역 또는 살인죄 등의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만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3)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 principle)

수동적 속인주의는 속인주의와는 반대로, 국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일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즉, ‘피해자(victim)’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자국민보호를 위한 관할권행사의 근거가 된다. 동 원칙은

22) 상계서.

23) 상계서.

24) 우리나라 형법은 제2조에서 ‘대한민국영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대한민국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속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제3조에서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가 그 현지에서는 합법이지만 피해자의 소속국내 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²⁵⁾

(4) 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

보호주의란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 영토의 보전 및 독립을 해치거나 국가의 공적 신용을 해치는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행위의 장소, 행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수동적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는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범죄로 그 현지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전자는 자국민의 이익을, 후자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²⁶⁾

(5)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앞서 살펴 본 네 가지의 이론적 기초들이 모두 당해 범죄와 관할권을 주장하는 국가 사이에 직·간접적인 관련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편주의원칙은 그 어떤 관련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국가는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주의원칙이다.

보편주의원칙은 행위의 장소 또는 행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모든 국가가 국제사회의 공통이익을 저해하는 보편적인 범죄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제법이 허용한 것으로, 해적행위·노예수송·전쟁범죄 등이 이러한 보편적인 범죄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그

25) 수동적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법도 제6조 단서를 통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병조·이중범, 전거서, 185쪽, 주)9.

26) 김대순, 전거서, 392쪽.

러나 보편주의원칙은 여전히 국가주권과 국내문제 불간섭을 기초로 하는 현대국제법의 구조 하에서는 결코 일반화될 수 없는, 단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원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²⁷⁾

2. 해상 법집행권의 내용

가. 정의

국가는 입법·집행관할권에 근거하여, 특정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일반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국제적 성격의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을 경우, 그 국가에 대하여 관련법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집행이라 함은 주로 자국 영역 내에서 행하는 국내법의 집행을 뜻하지만, 넓게 보면 협약 또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법집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해상 법집행권의 행사란, 한 국가가 자국 관할해역 또는 예외적인 경우 관할외측해역에서, 해당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행사하는 단속행위, 즉 경찰력의 행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의한 이러한 해상경찰활동은 인명·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 및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활동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처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활동으로 분류된다.²⁸⁾

나. 주체

해상에서의 법집행조치는 해양법이 정하고 있는 해역구분에 따라서 집행 대상이 되는 선박활동의 형태에 응하는 관할권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실시한다.²⁹⁾ 이는 주로 해양경찰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7) 상계서, 393쪽.

28) 山本草二, 전계서, 72쪽.

29) 상계서, 88쪽.

해양경찰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일반경찰개념을 통해 정부조직법 제44조 제3항에서 표현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경찰”이 의미하는 것을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 즉, 해양경찰의 개념은 해상에서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³⁰⁾

이와 같이 해상에서의 법집행조치는 주로 각국의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군이 이러한 임무를 보조하고 있다. 한편, 연안국의 관세 및 출입국관리와 관련되는 등의 특정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제한적이지만 법집행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 대상

해상 법집행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전통적으로 해양 전반의 안전에 위협을 끼치던 군사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요소들도 포함된다. 흔히 ‘해양에서의 불법행위(illegal activity at sea)’로 불리는 최근의 비전통적 요소들에는 대표적으로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 해상테러리즘, 불법어업, 마약류의 밀수, 해양 절도 및 사기, 인간 밀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등이 포함된다.

제2절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 법집행권의 국제법적 근거

국제적으로 각국의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종래에는 이러한 위협들이 주로 군사적인 충돌이나 이념의 대립에 의한

30) 박상희, “해양경찰법제정비의 기본방향”, 「국제해양문제연구」, 제18권 제1호(2007), 84쪽.

것이였다면, 현재는 해적(piracy) 및 해상무장강도(armed robbery), 선박에 대한 해상테러리즘(maritime terrorism),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의 불법적 확산,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 및 핵물질의 불법거래, 밀입국 및 불법무기의 밀거래, 천연자원의 고갈, 그리고 해양환경의 손상 등의 비전통적인 위협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³¹⁾ 이에 따라 국제 사회 역시 기존의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1988년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함)」 주도로 체결된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이하 ‘SUA협약’이라 함)」과 「대륙붕에 위치한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이하 ‘SUA의정서’라 함)」,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이하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이라 함)」 등의 국제 협약과 지역적 대응체제, 그리고 여러 기술적 예방수단을 통하여 이러한 위협들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다.

1. 전지구적 협약

가. 유엔해양법협약

3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 A/61/63(9 March 2006), p. 27.

(1) 개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결과로서 성립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전문에서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 동 협약은 효력발생규정인 제308조에 의거하여 1993년 11월 16일 가나가 60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1년 후인 1994년 11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세계 122번째로 동 협약에 서명하였고, 1995년 12월 1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1996년 1월 29일 세계 85번째로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국내에서는 1996년 2월 28일부터 동 협약이 발효하게 되었다.³²⁾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동 협약의 비준국은 협약으로 인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2) 구성

유엔해양법협약은 전문과 320개 조문의 본문, 그리고 9개의 부속서 및 4개의 결의안으로 구성된다. 해양을 공간별로 구분하여 해당 해역에서의 국가들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장에서 본 협약의 적용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제1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2장부터 제11장에 걸쳐 해양이라는 대상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해역별로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 육지 측 수역에 해당하는 내수(internal waters)와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 영해(territorial sea)를 연안국의 주권(sovereignty)이 미치는 공간으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연안국이 관할권이 행사할 수

32) 김현수, 「국제해양법」 (서울: 연경문화사, 2007), 30쪽.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해에 접속해 있는 일정 수역을 접속수역(contiguous zone)이라 정의하고 그 범위는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 최대 24해리의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은 자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방지, 또한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발생한 위의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위해 필요한 ‘통제(control)’를 할 수 있다.³³⁾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국제항행용해협(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과 군도국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항행용해협에서 해협 연안국의 주권과 관할권은 비록 동 수역이 연안국의 내수, 영해에 해당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이 행사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도기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에 대해서도 그 깊이나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군도국가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⁴⁾

제5장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³⁵⁾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³⁶⁾ 인공섬·인공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³⁷⁾ 또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동 협약의 규정 및 기타 국제법 규칙에 일치하는 입법권³⁸⁾과 이러한 조치의 집행권³⁹⁾을 인정받고 있다.

다음으로 제6장의 대륙붕(continental shelf)은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

33)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 제1항 (a), (b).

34) 상계협약 제49조.

35) 상계협약 제55조 및 제57조.

36) 상계협약 제56조 제1항 (a).

37) 상계협약 제56조 제1항 (b).

38) 상계협약 제58조 제3항.

39) 상계협약 제73조.

200해리 범위의 해저 및 하층토, 또는 대륙붕의 물리적 형상이 200해리 이원으로 연장된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또는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의 범위까지로서 영해 외측에 존재하는 것으로서,⁴⁰⁾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 해저굴착 및 해양과학조사 등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⁴¹⁾ 만약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한 경우에는 200해리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와 중복되며,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이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부분의 대륙붕에 대해서만 상부수역과는 무관하게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한다.⁴²⁾

유엔해양법협약은 제7장에서 국가관할외측해역에 해당하는 공해(high seas)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58년 협약 상 공해는 연안국의 영해와 내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수역을 일컬었지만,⁴³⁾ 이제는 어느 한 국가의 영해·내수·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군도국가의 군도수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의 모든 부분을 지칭함으로써 그 공간적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⁴⁴⁾ 일반적으로 공해에서는 기국주의(Flag State Jurisdiction)가 원칙이나 모든 국가는 공해상의 법질서 유지와 그들의 효과적인 공해상 자유 향유를 위하여, 예외적이고 특정한 상황에 한해, 공해상에서 타국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이러한 기국 이외의 관할권의 대상으로 노예수송(협약 제99조), 해적행위(협약 제100조 내지 제107조),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협약 제108조),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협약 제109조)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이처럼 각국에게 해양의 공간적 구분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제12장과 제13장을 통하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과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사안은 보다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40) 상계협약 제76조.

41) 상계협약 제77조.

42) 이용희, 전게논문, 133-134쪽.

43) 1958년 공해협약 제1조.

44) 유엔해양법협약 제86조.

나. 공해어업이행협정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를 통해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① 항행의 자유, ② 상공비행의 자유, ③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의 자유, ④ 국제법상 허용되는 인공섬과 그 밖의 시설 건설의 자유, ⑤ 어로의 자유, ⑥ 과학조사의 자유 등을 향유할 수 있다. 특히 공해상 어로의 자유(freedom of fishing)와 관련하여 동 협약 제116조는 다음과 같이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다음의 규정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국민이 공해에서 어업에 종사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a) 자국의 조약상의 의무

(b) 특히 제63조 제2항과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된 연안국의 권리, 의무 및 이익

(c) 이절의 규정

그러나 상기규정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는 원칙적으로 공해어업의 자유를 향유하면서도, 명시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성립된 후 범세계적인 환경 보전의 차원에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보존 인식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과도어획과 그에 대한 국제적 어업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함으로써 공해어업에 대한 규제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기 때문이다.⁴⁵⁾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는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공해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공해어업활동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공해에서의 경계왕래성어족(Straddling fish stocks) 및 고도회유성어족(Highly migratory fish species)이 국제수산기구의 주관 하에 관리되자, 지역수산기구 뿐만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단행되었다.⁴⁶⁾

45) 최종화, “WCPFC의 자원 보존관리조치 이행제도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1호(2008), 5쪽.

46) 상계논문, 6쪽.

이러한 조치들 중 대표적인 것에 해당하는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은 전문과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부속서(부속서 I: 데이터 수집 및 공유에 관한 표준 지침, 부속서 II: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의 예방적 참고 지표의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를 가지고 있다. 동 이행협정은 원칙적으로 공해에 적용되지만 일부 규정은 국가관할내측수역에서도 적용된다. 또한 적용 대상 어종은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이다.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협정이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동 이행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라고 하여 반드시 동 이행협정에 가입할 의무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구주연합 및 국제기구와 대만과 같은 조업실체(fishing entity)도 동 이행협정의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가 있다.⁴⁷⁾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으로 인해 연안국(costal States)과 공해조업국(States fishing on the high seas)은 기본적으로 경계왕래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⁴⁸⁾ 동 이행협정에서는 연안국과 공해조업국의 이러한 협력에 관한 규정을 협정 제7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보존관리조치의 일관성) 1.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관할해역 내의 해양생물자원의 탐사, 이용,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자국민이 공해상 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a) 경계왕래어족자원의 경우, 관련 연안국 및 자국민이 인접 공해에서

47)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 제1조 제2항.

48) 이러한 기본적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은 유엔해양법협약 제63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것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63조 제2항은 “동일어족 또는 이와 관련된 어종의 어족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연안국과 인접수역에서 이러한 어족을 어획하는 국가는 직접 또는 적절한 소지역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하여 인접수역에서 이러한 어족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자원을 어획하는 각국은 직접 또는 제3장에 규정된 적절한 협력 체제를 통하여, 인접 공해 수역에서 동 자원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의를 모색한다.

- (b)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경우, 관련 연안국 및 자국민이 동 자원을 해당 지역에서 어획하는 타국은, 국가관할해역 내외의 전지역에 걸쳐 이러한 자원의 보존을 확보하고 최적이용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장에 규정된 적절한 협력체제를 통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다. SUA협약 및 개정 SUA협약

(1) SUA협약 및 SUA의정서

Achille Lauro호 사건⁴⁹⁾을 계기로 하여 해상테러행위 규제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항해 안전에 대한 모든 불법행위의 예방과 그 범법자들의 기소와 처벌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 간 국제협력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⁵⁰⁾ 이에 따라 IMO가 주최가 되어 1988년 3월 10일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SUA협약과 SUA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 국제협약은 운항 중인 선박과 대륙붕에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각 당사국이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9) 동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85년 10월 7일 이집트 연안에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한 분파인 팔레스타인해방전선 소속 범인들이 이탈리아 여객선 아킬레 라우로(Achille Lauro)호를 납치하여 승객과 승무원을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50명의 팔레스타인 테러범의 석방을 요구하며,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승객을 살해하고 선박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결국 그들의 요구가 다음날까지 달성되지 않자, 이들은 유태계 미국인 Leon Klinghoffer를 총으로 쏜 후 휠체어와 함께 수장시켰다. Malvina Halberstam, "Terrorism on the High Seas: The Achille Lauro, Piracy and the IMO Convention on Maritime Safet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2(1988), p. 86.

50) 지상원,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의 국내수용 방안", 「해사법연구」, 제14권 제2호(2002), 107쪽.

동 협약은 제3조 제1항에서 해상항행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의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a) 무력 또는 무력적 위협이나 그 밖의 협박에 의해 선박을 억류·통제하는 행위
- (b)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선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c) 선박을 파괴하는 행위 또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협할 수 있는 훼손을 선박이나 그 화물에 대하여 손상을 야기하는 행위
- (d) 선박을 파괴할 수 있는 장치·물질 또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협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훼손을 선박이나 그 화물에 야기할 수 있는 장치나 물질을 모든 수단에 의하여 선박에 설치하거나 설치되도록 야기하는 행위
- (e) 항해시설의 파괴·심각한 손상이나 그 운용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
- (f)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정보를 교신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협하는 행위
- (g) (a) 내지 (f)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그 미수행위와 관련하여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행위

또한 어떠한 자든지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시도 또는 교사하거나 공범자 및 사인이나 법인이 어떠한 행위를 행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 중인 사람에 대하여 그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협하게 할 수 있는 폭력 행위의 실행, 선박의 파괴 또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협하게 할 수 있는 선박이나 그 화물에 대하여 손상을 야기하는 행위 및 항해 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 또는 그 조작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협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위협하여 당해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협하게 할 만한 경우 또한 범죄를 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선박이 한 국가 영해의 바깥 한계 또는 인접국에 대한 동 국가 영해의 횡적 한계 밖에 위치한 수역 안으로, 동 수역을 통과하여, 또는 동 수역으로부터 항해중이거나 항해할 예정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⁵¹⁾ 이것은 이 협약의 적용 수역을 원칙적으로 공해에서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것인데, 동 협약이 이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범죄인 또는 범죄 혐의자가 상기 국가 이외의 다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발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²⁾ 이것은 상당히 넓은 관할권을 인정한 것인데,⁵³⁾ 이로써 동 협약 상의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사건이든 최소한 1개국의 관할권을 인정하게 되어 관할권의 미비 때문에 테러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였다.

한편, SUA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대륙붕에 위치한 고정구조물에 대한 폭력적 위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SUA협약과 함께 SUA의정서가 1988년 3월 10일 채택되어, 1992년 3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⁵⁴⁾ 전문과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SUA의정서는 제1조 제1항에서 “협약 제5조, 제7조, 제10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본 의정서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대부분 SUA협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2) 개정 SUA협약

기존 SUA협약은 해상안전 내지 해상보안을 위협하는 폭력적 위해행위를 협약상의 범죄로 규정하고, 협약당사국들에게 그러한 범죄를 범한 행위자를 ‘인도 또는 기소’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협약상의 범죄행위에

51) SUA협약 제4조 제1항.

52) 상해협약 제4조 제2항.

53) 신의기, “해상테러억제를 위한 로마협약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1호(1998), 8쪽.

54) 최석운,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해사법연구」, 제18권 제2호(2006), 38-39쪽.

대한 철저한 형사소추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⁵⁾ 그러나 기존의 SUA협약은 매우 광범위한 유형의 불법행위들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유형의 해상테러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한 테러범이 생존해 있는 경우를 전제로 그에 대한 처벌을 강구한 것이기 때문에 자살테러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SUA협약과 SUA의정서는 9·11테러 이후 새로운 양상의 국제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2년의 제84차 IMO 법률위원회에서부터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⁵⁶⁾ 즉, 항공기가 테러도구로 사용됨으로 인해 선박 역시 테러도구가 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뿐만 아니라, 만약 WMD가 테러에 사용되면 그로 인하여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널리 확산되어, 결국 새로운 양상의 테러리즘 및 WMD의 차단을 위해 기존 SUA협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것이다.⁵⁷⁾

기존 SUA협약의 개정에 관한 최초의 논의는 선박 또는 대륙붕상 고정식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양상의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WMD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 규범체계로 SUA협약을 활용하는 것으로 협약 당사국들 간 논의가 이루어져 새로운 양상의 국제 테러리즘에 대처하고 동시에 WMD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규범체계 수립을 위한 SUA 협약 개정 의정서가 2005년 10월 14일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⁵⁸⁾

55) 상계논문, 39쪽.

56) IMO, "Legal Committee - 84th session: 22-26 April 2002", <http://www.imo.org>. 박희권,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 억제(SUA) 협약의 개정과 한국 외교", 「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 제2호(2006), 82쪽에서 재인용.

57) 정대율, "2005년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의 국내 대응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제18권 제1호(2006), 303쪽.

58) John R. Crook, "Contemporary Practice of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International Law : International Oceans, Environment, Health, and Aviation Law : United States Supports New Protocols Directed Against Use of Ships in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0, No.1(2006), p.224. 박희권, 상계논문, 82쪽에서 재인용.

개정 SU 협약 제3조bis는 앞서 언급한 SUA협약 제3조상 처벌대상 범죄를 확대하여 ① 선박을 이용하여 인명을 살상하거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 선박을 이용하여 인명 살상 또는 재산파괴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폭발물, 방사성물질 또는 BCN(Biological, Chemical and Nuclear)무기⁵⁹⁾를 사용하는 행위, ② 선박에서부터 유독물질, 유류, 액화천연가스 등을 방류하는 행위, ③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법상 금지된 BCN무기, 원료물질(source material), 특수 분열물질(special fissionable material), 특수 분열물질의 가공, 사용, 생산을 위하여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물자, 이중용도 물자 등을 운송하는 행위 등의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동 협약상 범죄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협약 당사국의 법집행 기관은 혐의 선박 기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승선·검색을 할 수 있다.⁶⁰⁾

2. 지역적 대응체제

공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배타적 경제수역의 항행 중에 오염을 유발하게 하는 선박, 대량살상무기의 수송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등과 같은 경우에는 기국에 의한 법집행만으로는 그 규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법집행조치의 틀이 국제협력체제로 옮겨가고 있다.⁶¹⁾ 해상 법집행조치에 관한 지역적 국제사회의 대응체제는 크게 (ㄱ) 해상 법집행조치의 실시에 대한 국제협력, (ㄴ) 각국의 집행조치를 실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국제협력으로 나뉜다.⁶²⁾ 국제사회는 사안별로 이러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59) 개정 SUA협약에서는 화생방무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BCN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60) 개정 SUA협약 제8조의 2 제5항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한 정선, 승선 및 수사의 허가를 해당 선박의 기국에 구할 경우에는 기국은 (a) 무조건 또는 조건첨부로 허가를 부여, (b) 스스로 승선조사, (c) 무조건 또는 조건첨부로 요청국과 함께 승선조사, (d) 허가 거절 등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혐의가 확실해진 경우 등에서는 허가요청을 위해 기국에게 통보한 뒤 4시간 이내에 회답이 없을 때는 요청국이 승선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1) 山本草二, 전게서, 90쪽.

62) 상게서, 88쪽.

데, 이러한 국제협력 체제를 통해서도 각국은 해상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가. 해적방지를 위한 대응체제

(1) IMO 및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대응체제

1990년대 들어 해적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러 국제기구 및 지역 협력체 등에 의한 해적방지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⁶³⁾

우선 IMO는 1992년에 말라카해협에서의 해적문제에 대한 초안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포함한 IMO 10개 회원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Working Group을 발족하였다. 해당 Working Group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승무원, 선주, 기국, 연안국과 항만당국이 선박에 대한 해적과 해상무장강도를 처리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예방책과 실행계획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되었다.⁶⁴⁾

1996년 이후 해적행위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IMO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MSC)는 해적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및 서아프리카 4개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2월에는 싱가포르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동 지역에서의 해적문제와 관련하여, 관계국간 수사방침의 공동화, 수사협력의 강화 및 해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방법, 협력, 책임, 협의 등에 관한 협약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1년 3월 동남아시아 해역에서의 선박에 대한 해적 및 해상강도 행위를 퇴치하기 위한 동남아 국가 간 공조체제

63)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제102조에서 해적행위를 ‘공해상 또는 기타 국가관할권 밖’에서 행해지는 불법적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대부분의 해적행위가 발생하는 내수 및 영해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IMO 및 ICC IMB에서는 행위가 발생하는 해역에 따라 공해에서의 불법적 행위는 해적행위로, 내수 및 영해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행위는 무장강도로 분류하였는데, 내용면에서 양자는 동일한 개념이다.

64) 민꽃별, “해상안전범죄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2006, 50-51쪽.

를 더욱 강화하고, 이에 대한 IMO 차원에서의 기술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적방지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⁶⁵⁾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중 거의 절반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지역 국가들도 해적퇴치를 위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즉, 2000년 이후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관련 정부 및 민간단체들이 참가한 국제회의들을 개최하여 해적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제회의를 통해서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해적방지에 관한 기국 및 관련 국가들의 협력체제 구축, 기술적 시스템을 통한 국가간 정보교환 및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책 수립 등을 꾀하고 있다.⁶⁶⁾

(2) 유엔안보리 결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회원국 및 국제기구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퇴치를 위해 2008년 12월 16일 유엔안보리 결의 제1851호를 채택하였다. 동 결의는 기존의 안보리 결의(제1814호, 제1816호, 제1838호, 제1844호, 제1846호 등)를 보완한 것으로, 본문을 통해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사전허가를 전제로 소말리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all necessary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해적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회원국 및 지역기구가 소말리아 인근국가들과 양자협정 등을 체결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소말리아 해적퇴치 활동을 수행 중인 모든 회원국 및 국제기구가 공동의 창구를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메카니즘을 마련할 것과 소말리아 해적 관련 정보를 조정하기 위해 지역 센터를 설립하고, 해적퇴치를 위한 지역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⁶⁷⁾

65) 전일수·노영돈, “해적방지를 위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해운물류연구」, 제42호(2004), 83쪽.

66) 상계논문, 84-85쪽.

67) UN Doc. S/RES/1851(2008.12.16).

나. 해상테러방지를 위한 대응체제

SUA협약 및 SUA의정서와 더불어 해상에서 발생하는 테러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노력은 유엔에 의해 체결된 국제협약과 기타 지역적 대응체제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은 9·11 사태 이후 테러리스트가 저지른 특정 범죄를 다루는 협약⁶⁸⁾을 채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엔은 이 협약들을 통해 비록 “테러리즘(terrorism)”의 개념정의에는 실패하여 보편적 혹은 일반적인 테러리즘의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였지만, 항해에 있어서의 테러행위 등 특정의 폭력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제7조 상의 조치로 취해진 결의 제1373호를 통해 국제 테러리즘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선언함에 따라, 모든 유엔회원국들에게 해상에서의 테러행위를 진압 및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⁶⁹⁾

해상테러리즘의 규제와 방지를 위한 양자간 또는 지역적 조약의 체결은 9·11 사태로 피해를 입은 미국의 주도하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일련의 테러 사건들 이후 국제사회의 평화를 목적으로 WMD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창한 일종의 다자간 협력구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이 이에 해당한다. PSI는 국제사회의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 국제법 및 각국의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대상물자의 이전 및 수송의 저지를 위해 참가국이 공동으로 취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실현하기 위한 대처이다.

이러한 PSI는 자국 내수·영해·접속수역에서 WMD운송 혐의 선박의 승

68) 대표적으로 1997년 12월 15일 뉴욕에서 채택되어 2001년 5월 23일 발효된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과 1999년 12월 9일 뉴욕에서 채택되어 2002년 4월 10일 발효된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이 있다. 이들 두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2004년 3월 18일에 각각 조약 제1660호와 제1661호로 발효되었다.

69) 신창훈, “해상테러리즘의 규제와 방지에 관한 국제법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서울국제법연구」, 제11권 제2호(2004), 75-76쪽.

선 및 검색, WMD운송 혐의 항공기의 착륙 유도 및 검색과 영공 통과 거부, 자국 항만·항공에서 WMD 관련 물자 환적 시 검색, 자국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 자국 선박에 대한 외국 승선·검색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3년 5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1개국의 발의로 출범하여, 아시아 15개국, 아프리카·중동 16개국, 유럽 및 구 소련지역 53개국, 미주 10개국 등 전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SI는 2009년 5월 26일 우리나라가 전면 참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전체 참여국은 95개국으로 늘어났다.⁷⁰⁾

다. 공해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대응체제

(1) IUU 어업단속을 위한 합동순찰

해상에서의 합동순찰(Joint Patrol)은 연안국법령을 위반한 피의선박을 추적하는 경우 수사실시상의 편의로써 행해지는 국제협력이다. 합동순찰에는 합동감시나 정보공유, 피의선박의 조사, 추적에 대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연안국의 단속해역이 광대하거나, 단속능력이 불충분한 경우, 또는 협소한 해역에서 여러 국가의 영해의 경계가 얹혀있거나 피의선박이 용이하게 다른 국가의 영해로 도주가 가능한 경우에 유효한 조치이다.⁷¹⁾ 실제로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양국 간의 조약(Treaty between Australia and France on Cooperation in the Maritime Areas Adjacent to the French Southern and Antarctic Territories)을 통해 합동감시시스템과 상호 정보제공·공유 체제를 도입하면서 어느 한쪽의 체약국에 의해서 국제법상 적절하게 개시된 외국어선의 추격을 다른 쪽의 체약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상대국 영해에 대해서도 계속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⁷²⁾ 또

70) "<PSI참여> PSI 개관", 인터넷 연합뉴스, 2009년 5월 26일자(방문일: 2009년 10월 24일).

71) 山本草二, 전계서, 91쪽.

72) 상계서.

한 양국은 어업법령의 집행협력에 관한 조약(Treaty between Australia and France on Cooperative Enforcement of Fisheries Laws in the Maritime Areas Adjacent to the French Southern and Antarctic Territories)을 체결하고 이 협력에 따른 감시를 일반화하면서 단속선에게 상대국의 검사관이 승선하는 경우에도 그 감시선이 상대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위반어선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당해연안국의 법령을 집행할 수 있게 하였다.⁷³⁾

(2) 지역수산기구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은 제8조를 통해 연안국 및 공해 조업국은 적절한 소지역적, 지역적 수산관리기구 또는 약정을 통하여, 경제왕래어족자원 및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력을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연안국과 공해조업국의 협력은 관련국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역(또는 소지역: regional or sub-regional) 수산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해어업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지역수산기구를 반드시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기존에 있는 수산기구를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⁴⁾

연안국과 공해조업국은 해당 지역수산기구가 있을 때, 그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거나 또는 지역수산기구나 약정이 설정한 보존관리조치를 적용하는데 동의함으로써 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⁷⁵⁾ 이러한 국가들만이 보존관리 조치의 적용 대상인 어업자원을 이용할 권한을 가지고, 따라서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지도 않고 그 지역수산기구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따르겠다고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해당 수산기구에서 관리하는 자원을 어획할 수 없다.⁷⁶⁾ 한편, 이러한 지역수산기구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73) 상계서, 92쪽.

74) 김선표 외, 「유엔해양협약 이후 새로운 공해어업질서의 법적 성격 연구」,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18쪽.

75)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 제8조 제3항.

76) 상계협정 제8조 제4항.

연안국 및 해당 소지역 또는 지역의 공해에서 조업하는 국가는 공해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거나 기타 적절한 약정을 설정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하며, 이러한 기구가 약정의 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⁷⁷⁾

지역수산기구는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이 경계왕래어족과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매커니즘으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지역수산기구는 2006년 현재 전 세계에 걸쳐 약 50여개가 있으며, 대표적 지역수산기구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 전미열대다랑어 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 인도양 다랑어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 IOTC), 북서대서양수산기구(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NAFO),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CCSBT),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인도양수산위원회(Indian Ocean Fishery Commission: IOFC),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등이 있다.

제3절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 법집행권의 행사를 위한 국내입법태도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연안국의 관할해역 내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해역별 입법과 목적별 입법을 병행하고 있다.⁷⁸⁾

77) 상계협정 제8조 제5항.

78) 이용희, 전게논문, 134쪽.

1. 관할해역별 입법례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이라는 공간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공간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연안국은 국가관할해역에서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 관할권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내수에 관한 별도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관할해역에 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을 두고 있다.

먼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제5조에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외국선박의 대한민국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를 통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정부선박을 제외한 외국선박이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당국은 정선·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⁹⁾

- 
- ① 대한민국의 주권·영토보전 또는 독립에 대한 여하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기타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원칙을 위반한 방법으로 행하는 여하한 힘
의 위협이나 행사
 - ② 무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훈련 또는 연습
 - ③ 항공기의 이함·착함 또는 탑재
 - ④ 군사기기의 발진·착함 또는 탑재
 - ⑤ 잠수항행
 - ⑥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를 수집
 - ⑦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선전·선동
 - ⑧ 대한민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
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 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79)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

⑩ 어로

⑪ 조사 또는 측량

⑫ 대한민국 통신체제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⑬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⁸⁰⁾

동 법률은 접속수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제6조의 2에서,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및 제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당국이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유엔해양법협약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는 1996년 8월 배타적 경제수역법이 제정되어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규정을 동일하게 수용하고 있다. 동 법은 제3조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질 수 있는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에서 대한민국의 권리를 행사 또는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당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추적권의 행사, 정선·승선·검색·나포 및 동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⁸¹⁾

한편 대륙붕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법률을 두어 규정하지는 않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통해 우리나라 대륙붕에 대한 탐사와 채취,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탐사 및 채취권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선박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두지 않고, 다만 벌칙규정만을 두고 있을

80) 상계법률 제5조 제2항.

81)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5조 제3항.

뿐이다.⁸²⁾ 따라서 대륙붕에 대한 우리나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우리나라 법집행조치의 근거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⁸³⁾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의 한계 밖으로 연장된 대륙붕에서 행해지는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집행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목적별 입법례

우리나라에서 법집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목적별로 법집행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입법례로서는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수산업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그리고 해양과학조사법 등을 들 수가 있다.

우선 관세법은 제11장(제268조의 2 내지 제282조)에서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두어, 밀수출입에 관한 범행에 대한 징역·벌금형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더불어 관세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또는 통고 처분되는 관세범에 대해 세관 공무원이 조사 및 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⁴⁾ 이 경우 만약 관세범 조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차량·항공기·창고 기타의 장소를 임검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⁸⁵⁾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선박 등이 출입국항 또는 부득이한 경우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 출입항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⁶⁾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하여 검색을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 ① 승무원 및 승객의 출입국적격여부 또는 이선여

8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83) 이용희, 전제논문, 135쪽.

84) 관세법 제12장.

85) 상계법률 제300조.

86) 출입국관리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부, ② 법령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출국을 피하는 자가 선박 등에 타고 있는지의 여부, ③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⁷⁾

다음으로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있는 수산업법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불법어업단속을 위해서,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⁸⁾ 이를 위해 동 법은 어업감독 공무원에, 동 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⁸⁹⁾

수산업법과 더불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에 의한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EEZ어업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정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⁰⁾ 동 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서는 정선명령에 불응한 선박들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 법, 동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승선·나포·검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⁹¹⁾

해상에서의 선박 항행과 관련되는 안전 및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해상

87) 상계법률 제69조 제3항.

88) 수산업법 제72조.

89) 상계법률 제73조.

90) EEZ어업법 제6조의 2.

91) 상계법률 제23조 제1항.

교통안전법은 제66조에서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동 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정선하게 하거나 회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정선 및 회항 명령을 위반한 자는 동 법 제71조 벌칙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와 관련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은, 제117조에서 선박이 동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해양과학조사법을 제정하여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법은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의 관할해역에서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불법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한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정선·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⁹²⁾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입법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국제법상 인정하고 있는 연안국의 법집행권에 대한 근거를 국내법적으로 대부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³⁾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개별 법률상에 나타나는 법집행조치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우선 법집행주체로서 대부분 해양경찰, 해군 등을 예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와 관세의 경우 세관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특별 규정을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법집행권의 행사 요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법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집행권의 행사 형태를 보면, 대부분 정선·승선·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조치의 유형을 통해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2) 해양과학조사법 제13조.

93) 이용희, 전제논문, 137쪽.

제3장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정당성 분석

제1절 해상 법집행조치로서 무력사용의 필요성

해상 법집행과정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이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합법적인 조치인가에 대한 분석에 앞서 해당 법집행과정에서 무력사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는 국제법상 국가들의 무력사용이 분명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해당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1. 해상 불법행위의 폭력성

최근의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행위는 폭력 및 약탈행위로만 그치지 않고 국제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선원납치 및 해상밀입국, 불법어업, 총기밀매, 마약 거래 등과 같이 중대범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표 3 참조) 국제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2003년 445건의 발생을 기점으로 점차 발생건수가 줄어들었으나, 2007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표 3> 지역별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발생현황⁹⁴⁾

구분(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 계
동남아	161	242	153	153	170	158	102	83	70	53	1345

94)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gicom.s.go.kr>(방문일: 2009년 2월 11일).

극동	6	20	18	17	19	15	20	5	10	11	141
인도	45	93	53	52	87	32	36	53	30	23	504
중남미	28	39	21	65	72	45	25	29	21	14	359
아프리카	55	68	85	78	93	73	80	61	120	189	902
기타	5	7	5	5	4	6	13	8	12	2	67
미상	0	0	0	0	0	0	0	6	0	0	6
소계	300	469	335	370	445	329	276	245	263	292	3324

〈표 4〉 최근 10년 간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발생 현황⁹⁵⁾

구분(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수치	300	469	335	370	445	329	276	245	263	292	3324

그리고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의 공격 유형을 보면 선박승선이 2,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승선시도(732건), 피납(191건), 총기발사(1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공격 유형⁹⁶⁾

구분(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승선시도	46	145	83	71	93	77	52	56	62	47	732
총기발사	12	6	14	13	20	13	19	7	14	46	164
선박승선	227	309	219	257	311	228	182	162	169	151	2215
피납	10	6	16	25	19	11	23	14	18	49	191
억류	1	2	1	0	0	0	0	0	0	0	4

95) 상계사이트(방문일: 2009년 2월 11일).

96) 상계사이트(방문일: 2009년 2월 11일).

행방불명	4	1	2	4	2	0	0	0	0	0	13
소 계	300	469	335	370	445	329	276	239	263	293	3319

또한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의 무기사용이 최근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총기류로 무장한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행위가 급증하여 이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승무원의 살해, 상해 및 폭행 등 인명에 대한 피해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상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선박을 납치 또는 점거하거나 선박에 승선한 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인 해상테러행위 역시 무장한 단체들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피해의 심각성이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행위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상에서의 폭력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등의 관련 협약들은 해당조치들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써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의 유형만 제시하고 있어 법집행과정에서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해상테러행위와 같은 해상에서의 폭력적 행위를 진압할 시에는 법집행공직자의 안전 및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적절한 무력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2. 혐의선박의 불응 및 저항

해상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은 대부분 연안국 관할해역에서 외국선박이 해당 법령을 위반한 뒤에 연안국의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안국의 추적권 행사 과정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다.⁹⁷⁾ 특히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사례가 이

97) 2001년 3월 29일 오스트레일리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우루과이 선적어선 South Tomi호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의 단속선 Southern Supporter호가 14일간 3,400해리의 추격을 행사하였다. 단속선과 추적을 함께한 합동순찰선이 South Tomi호에 근접하여 도주를 포기하도록 할 때 단속선의 어업관리관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군이 피의선박에 승선하였으나, 동 과정에서 무력은 사용되지 않았다.

러한 경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연안국의 추적권 행사와 관련하여 무력사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추적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추적권 주체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무력사용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연안국이 추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면 추적권의 행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⁹⁸⁾

추적권의 행사와 더불어 연안국의 법집행과정에서 무장한 선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는 경우에도 무력사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 경우에도 단지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의 유형이 법집행공직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제시되고 있어, 무기 등을 사용하는 저항에 대하여 효과적인 진압 및 법집행공직자의 안전을 위해서 역시 합리적인 무력사용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2절 해상 법집행조치로서 무력사용의 국제법적 근거

현행 국제해양법은 해양에 관한 국제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관할해역에서 자국의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그리고 심지어 국가관할외측해역에서 일정한 경우 또는 관련 조약들에 따라서 외국국적의 선박들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들에 제공한다. 물론 이러한 권한의 이행은 효과적인 해상에서의 법집행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광범위한 해역을 단속하기에는 다소 제한된 수단과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⁹⁹⁾ 해군이 종종 이러한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있다.¹⁰⁰⁾ 해상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관할권행사는 국가 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해양경찰 및 해군

98) 이민호, 「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서울: 연경문화사, 2007), 153쪽.

99) D.P. O'Connell, *op.cit.*, pp. 1063-1064.

100) R.R. Churchill and A.V. Lowe, *The Law of the Sea*(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p. 426.

이 효과적인 법집행조치를 행사하고, 특히 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외국선박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유엔해양법협약상 법집행조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 관련한 종합적인 국제조약으로, 기본적으로 해양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해당 해역별로 국가들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함과 동시에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과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내용은 보다 자세하게 개별 장(chapter)을 두어 사안별로 규율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집행조치의 내용을 관할해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가관할해역에서의 법집행조치

해상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주로 국가관할해역 내에서 행해지고 있다. 20세기까지는 이러한 연안국의 권리행사가 주로 방어적인 목적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⁰¹⁾ 이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외국선박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연안국의 법집행 권리와 항행의 자유 간에 균형을 맞추어 규정하고 있다.¹⁰²⁾ 또한 다양한 해역별로 관할권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선박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기국주의를 인정하는 한편 국가관할해역에서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기국의 관할권과 연안국의 관할권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¹⁰³⁾ 해상

101) I.A. Shearer, *op. cit.*, p. 429.

102) Patricia Jimenez Kwast, "Maritime Law Enforcement and the Use of Force: Reflection on the Categorisation of Forcible Action at Sea in the Light of the Guyana/Suriname Award",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Law*, vol.13, no.1(2008), p. 53.

103) Alfred H. A. Soons, "Law enforcement in the Ocean-An Overview", *WMU*

에서 발생하는 외국선박의 다양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조치는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¹⁰⁴⁾

국가관할해역에서의 연안국 법집행조치(law enforcement measure)는 현행 국제해양법상 연안국에 부여된 주권(sovereignty) 및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 또는 관할권(jurisdiction)에 따라 행사되는데,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몇 규정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연안국의 안보 및 자원보존, 그리고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법집행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내수 및 영해에서의 법집행조치

국제법상 국가영토의 일부로 간주되어 연안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주권영역인 내수(internal waters)에서¹⁰⁵⁾ 연안국은, 외국선박이 내수를 향하여 항행하거나 내수 밖의 항구시설에 기항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박이 내수에 들어가기 위하여 또는 항구에 기항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허가조건의 위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¹⁰⁶⁾ 내수와 마찬가지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인 영해에서도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무해하지 않은 통항¹⁰⁷⁾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¹⁰⁸⁾

Journal of Maritime Affairs, vol.3, no.1(2004), p.3.

104) 이용희, 전제논문, 129쪽.

105)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서울: 두남출판사, 2008), 29쪽.

106) 유엔해양법협약 제25조 제2항.

107)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9조 제2항에서,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다음의 어느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외국선박의 통항을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a) 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 (b)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이나 연습
- (c) 연안국의 국방이나 안전에 해가 되는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d) 연안국의 국방이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 행위
- (e) 항공기의 선상 발진·착륙 또는 탑재
- (f) 군사기기의 선상 발진·착륙 또는 탑재
- (g) 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또한 연안국은 i) 자국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ii) 그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나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 iii) 범죄가 발생한 선박의 선장이나 기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가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iv)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외국선박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외국선박을 정선하여 승선할 수 있다.¹⁰⁹⁾ 이러한 형사관할권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 내에서 영토 또는 내수에서 행하여진 범죄자를 체포 또는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¹¹⁰⁾ 이밖에도 연안국은 외국선박이 영해를 항행하는 동안이나 항행하기 위하여 외국선박 스스로 부담하거나 초래한 의무 또는 책임이 존재하는 경우와 영해에 정박하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해당 외국선박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행할 수 있다.¹¹¹⁾

(2) 접속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법집행조치

영토주권에 근거하고 있는 내수 및 영해와는 달리 접속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 법집행조치는 해당 수역의 설정목적에 따라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¹¹²⁾

접속수역(contiguous zone)에서 연안국은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통화를 신고 내리는 행위 또는 사람의 승선이나 하선

(h) 이 협약에 위배되는 고의적이고도 중대한 오염행위

(i) 어로활동

(j)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의 수행

(k) 연안국의 통신체계 또는 그 밖의 설비·시설물에 대한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l)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밖의 활동

108) 상계협약 제25조 제1항.

109) 상계협약 제27조 제1항.

110) 상계협약 제27조 제2항.

111) 상계협약 제28조 제2항 및 제3항.

112) D.P. O'Connel, *op.cit.*, p. 1071.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 방지 또는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발생한 위의 법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필요한 ‘통제(control)’를 할 수 있다.¹¹³⁾ 여기서 연안국에게 단순히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안국으로 진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승선하여 검색하고 위반방지를 위한 경고를 발할 수 있을 뿐임을 뜻한다.¹¹⁴⁾ 따라서 접속수역에서 법령위반 선박을 체포하거나 항구로 예인할 수는 없다. 다만, 연안국의 내수에서 출항하여 나가는 외국선박이 위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추적권의 일환으로 해당선박에 대한 정선, 승선, 검색 및 나포까지의 법집행조치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¹¹⁵⁾ 한편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내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¹¹⁶⁾



(3)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법집행조치

연안국은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상의 투기에 관하여 국내법령과 권한 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 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집행할 수 있다.¹¹⁷⁾ 또한 타국의 영해를 항행하는 외국선박이 운항 중에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라 제정된 국내법령을 위반하였다고

113)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 제1항.

114) 이용희, 전제논문, 131-132쪽.

115) I.A. Shearer, "Problems of Jurisdiction and Law Enforcement against Delinquent Vessel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35(1986), p. 330.

116) 유엔해양법협약 제73조 제1항.

117) 상계협약 제216조 제1항.

민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연안국은 위반관련선박의 물리적 조사를 행할 수 있다.¹¹⁸⁾ 기항국(port state) 역시 외국선박이 자국의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권한 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 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에 위반하여 자국의 내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행하여진 외국선박으로부터의 배출에 관하여 조사를 행하고 증거가 허용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¹¹⁹⁾ 이와 같이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연안국 또는 기항국이 외국선박에 대해 행할 수 있는 물리적 조사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라 그 선박에 비치하도록 요구된 증명서, 기록 및 그 밖의 서류나 그 선박이 비치하고 있는 유사한 서류심사에 국한된다.¹²⁰⁾

나. 국가관할외측해역에서의 범집행조치

일반적으로 국가관할외측해역, 즉 공해에서는 기국만이 자국의 선박에 대해서 입법 및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이른바 기국주의가 원칙으로,¹²¹⁾ 이는 Lotus호 사건¹²²⁾에 대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PCIJ)의 판결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공해상의 선박은 선박이 게양하고 있는 국기의 국가의 권한 행사를 제외

118) 상계협약 제220조 제2항.

119) 상계협약 제218조 제1항.

120) 상계협약 제226조 제1항.

121) 유엔해양법협약 제92조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약이나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한다.”

122) Lotus호 사건은 1926년 지중해 공해상에서 프랑스 선박 Lotus호와 터키 선박 Boz-Kourt호가 충돌하여 터키 선박이 침몰하고 터키인 8명이 사망한 것에 대하여 터키 당국이 Lotus호의 프랑스인 책임자를 체포하여 기소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다. 동 사건에서 양국은 터키가 프랑스인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법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PCIJ에 회부하였고, 이에 PCIJ는 터키가 행사한 관할권을 금지하는 국제법은 없으므로 재판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고는 어떠한 권한에도 종속되지 아니한다. 공해자유 원칙에 의해 공해에 어떠한 영토 주권(territorial sovereignty)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에서 타국 선박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관할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³⁾

이러한 기국주의 원칙은 공해자유원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논리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¹²⁴⁾ 유엔해양법협약은 제87조를 통해 연안국 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공해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평등한 주권을 가지는 국가들은 공해를 평등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공해의 사용은 공해상 타국의 선박을 간섭할 수 없는 국가들의 의무로 귀결된다. 결국 이러한 타국 선박에 대한 간섭 금지의 의무는 공해상 선박들에 대한 배타적인 기국관할권의 원칙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다.¹²⁵⁾ 그러나 공해의 자유는 무질서함을 의미하지 않는데, 유엔해양법협약은 공해상 기국주의의 대표적인 예외로 인정되는 군함의 임검권 및 추적권을 모든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1) 임검권(right of visit)

공해상 군함의 임검권은 일찍이 일반 국제관습법에 의해 인정된 제도로,¹²⁶⁾ 임검권에 의한 법집행조치는, 공해상에서 해적행위, 노예거래, 무허가방송에 종사하고 있거나 무국적선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체포 및 나포의 형태로 나타난다. 공해상 임검권의 주체는 본래 군함이나,¹²⁷⁾ 군용항공기 및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

123) *The Lotus case, (France vs. Turkey)*, PCIJ(Ser. A), No. 10, 1927, p. 25.

124) 김자영, “해양법상 공해자유원칙의 현대적 의의”,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6, 19쪽.

125) Robert C. F. Reuland, "Interference with Non-National Ships on the High Seas: Peacetime Exceptions to the Exclusive of Flag State Jurisdiction",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22(1989), p. 1161.

126) ILC Draft Art. 46 Commentary. *ILC Yr.Bk.*(1965), p.261.

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도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¹²⁷⁾ 한편, 임검권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혐의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10조에서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을 제외한 외국선박을 공해상에서 만난 군함에게 다음과 같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혐의선박을 임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i) 그 선박의 해적행위예의 종사
- ii) 그 선박의 노예거래예의 종사
- iii) 그 선박의 무허가방송예의 종사 및 군함 기국이 제109조에 따른 관할권 보유
- iv) 무국적선
- v) 선박이 외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국기제시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군함과 같은 국적 보유

이러한 임검권은 대상 선박의 혐의의 정도에 따라 국기의 심사·임검·승선검색·나포·구인(拘引) 등의 단계로 발전된다.¹²⁸⁾ 우선 임검권의 대상이 되는 혐의가 있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만난 군함은 해당 선박에 접근하여 국기를 게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군함은 실제로 혐의선박에게 국기를 제시하라는 표시로 국제신호서에 의한 기호 및 자신의 국기를 올리고, 공포탄 1발을 발사한다.¹³⁰⁾

이러한 조치에도 국기를 제시하지 않거나 국기오용 등의 혐의가 사라지지 않으면 다음으로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공포탄 2발의 발사로 혐의선박에게 임검할 뜻을 알릴 수 있다. 공포탄의 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진을 계속하는 선박에게는 그 선수방향(船首方向)에 포 1발을 발사하여

127) 1958년 공해협약 제22조.

128) 유엔해양법협약 제110조 제4항, 제5항.

129)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서울: 21세기북스, 2004), 647쪽.

130) Robert Jennings & Arthur Watt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I(London: Longman Group, 1992), p. 737.

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선수방향에 사격이 있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군함은 적절한 실력을 행사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임검권의 행사과정에서 혐의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 과정에서 무력의 사용은 정선명령 및 공포탄에 불응할 때 실탄을 발사하며, 실탄 발사에도 응하지 않을 때에는 포격을 가하되 돛대로부터 점차 선체에 이르는 단계적인 표적을 서서히 선택해야 한다.¹³¹⁾ 그러나 이러한 군함의 실력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강제수단이 되도록 신중히 조처해야 한다.¹³²⁾

정지된 혐의선박을 임검할 시에는 군함은 혐의선박에 대하여 장교의 지휘 아래 보조선을 파견하여 서류를 검열할 수 있고, 그 후에도 혐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중하게 그 선박 내에서 계속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¹³³⁾ 이러한 임검을 통해 그 혐의가 확정되었을 때는 군함의 선장이 자기 부하의 장교를 지명하여 혐의선박의 지휘권을 그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게 한 뒤 나포한 선박과 승선 중이던 인원 및 재화의 안전에 책임을 지며 나포선박을 판결에 회부할 수 있는 항구까지 안전하게 항진케 하여야 한다.¹³⁴⁾



(2)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

연안국은 자국의 영해 또는 접속수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관할해역에서 타국 선박이 연안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외국선박을 공해까지 계속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다. 이러한 연안국의 권리를 추적권이라 하는데, 이 추적권은 임검권과 더불어 공해상에서의 기국주의에 대한 예외로 허가 없이 행한 불법어로와 같은 국내법령 위반과 그에 따른 연안국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복·도주의 경우로써 설명된다.¹³⁵⁾

131) 김정균·성재호, 「국제법」(서울: 박영사, 2006), 481쪽.

132) 김영구, 전거서, 651쪽.

133) 유엔해양법협약 제110조 제2항.

134) Robert Jennings & Arthur Watts, *op. cit.*, pp. 738-739.

135) D.P. O'Connel, *op.cit.*, pp. 1077-1078.

추적권은 임검권과 마찬가지로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여서만 행사될 수 있다.¹³⁶⁾

추적권의 행사요건은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항해의 자유의 범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 따라 그 행사요건이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¹³⁷⁾ 우선 외국선박이 자국의 관할해역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일치하도록 채택한 자국의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good reason)’가 있어야 한다.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기에 단순한 법령위반의 혐의만으로도 성립된다고 본다.¹³⁸⁾ 그리고 이러한 추적은 그 외국선박이나 그 선박의 자선 중의 하나가 추적국의 내수·군도수역·영해 또는 접속수역 안에 있을 때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도 적용된다.¹³⁹⁾ 마지막으로 추적은 시각적 또는 청각적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에게 보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에만 개시될 수 있고,¹⁴⁰⁾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영해나 접속수역 등 관할수역 이원의 공해상으로 계속될 수 있다.¹⁴¹⁾ 이러한 추적권의 행사는 피추적선이 그 자국 또는 제3국의 영해로 들어감으로써 종료된다.¹⁴²⁾

추적권의 행사시 무력사용에 관해서는, 선박의 정선을 위한 무력사용은 허용되지만, 최후적 수단으로서 당시 상황에 적절한 수준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그 목적은 선박의 정지에 국한되어야 하고 승선인원의 인명에 대한 보호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¹⁴³⁾ 한편 추적대상 선박이 사격을 가하며 정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폭발성 실탄사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주장¹⁴⁴⁾

136)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제5항.

137) Kwitakowska, *The 200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Law of the Sea*(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9), p. 221.

138) 김영구, 전거서, 653쪽.

139)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

140) 상계협약 제111조 제4항.

141) 상계협약 제111조 제1항.

142) 상계협약 제111조 제2항.

143) 이용희, “국적불명선 「장어 3705」호 침몰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국제법학 회논총」, 제47권 제1호(2002), 155쪽.

되고 있는데, 이는 공해어업이행협정의 규정에서도 자기방어적 관점에서 무력사용이 가능함을 암시한 것과 일맥상통하다.¹⁴⁵⁾

2. SUA협약상 범집행조치

해적행위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상에서 모든 국가에게 나포 및 국내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해적행위와 범행의 목적 등의 면에서 성격이 다른 해상테러행위는 SUA협약과 같은 별도의 조약으로 규제되어, 결국 동 협약의 당사국은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자국 관할수역 내에서의 관할권은 물론 공해상에서의 해상테러행위에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 SUA협약 제8조의 2는 협약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해 협약당사국의 범집행기관이 승선과 검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의 SUA협약이 사후처벌을 위한 재판관할권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자살테러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경찰관할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⁶⁾ 동 규정에 의한 승선·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국이 혐의선박의 기국에 승선·검색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국은 요청을 수락·거부·공동 검색 또는 기국(피요청국)에 의한 자체 검색 등 4가지 조치 중 하나를 취하여야 한다.¹⁴⁷⁾

SUA협약상 승선·검색 제도에 있어 협약당사국은 개정 SUA협약의 서명·비준·수락 또는 가입 시에 자국국적 선박에 대하여 승선·검색에 대한 포괄적 사전승인을 IMO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승선·검색결과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 있는 국가는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제공하

144) D.P. O'Connell, *op.cit.*, p. 1072.

145) 이용희, “국적불명선 「장어 3705」호 침몰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155쪽.

146) H.E. Jose Luis Jesus, “Protection of Foreign Ships against Piracy and Terrorism at Sea: Legal Asp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18(2003), p. 395.

147) 박희권, 전개논문, 83-84쪽.

여야 하며, 협약당사국은 선박의 국적확인·승선 및 검색요청의 발송과 접수를 담당할 정부부서를 지정 또는 창설하여야 한다. 따라서 승선·검색국은 강제적 분쟁해결, 손실보상, 정보교환 등과 같은 안전조치를 통하여 기국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¹⁴⁸⁾

3. 공해어업이행협정 및 지역수산기구에 의한 법집행조치

공해상 기국주의의 대표적인 예외인 임검권 및 추적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과 지역수산기구 등에서도 공해에서 기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의한 법집행조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은 보다 효과적인 법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기국주의 원칙에 따른 선박의 선적국에 의한 집행을 넘어서, 관련국(위반어선 발견국 및 항만국)에게도 어느 정도의 강화된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동 이행협정은 제19조를 통해 전통적인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기국이 경계왕래어족자원과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을 위한 소지역적, 지역적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도록 위반어선에 대해 1차적인 책임과 단속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공해상에서 위반어선을 발견한 국가에게도 승선 및 검색권을 부여하고 있다.¹⁴⁹⁾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상 공해상 승선·검색절차는 2004년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 어족보존관리에 관한 협약(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이하 ‘WCPFC 협약’이라 함)」¹⁵⁰⁾이 그대로 답습하였고, 현재 WCPFC, NAFO, CCAMLR 등 총 5개 지역수산기구가 공해상 승선검색절차를 도입하고 있다.¹⁵¹⁾

148) H.E. Jose Luis Jesus, *op. cit.*, p. 396.

149) 김선표 외, 전제보고서, 21쪽.

150) WCPFC협약은 2000년 9월 5일 채택되어 2004년 6월 19일 발효되었고, 2004년 11월 15일 조약 제1692호로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었다.

151) 안치국, “공해상 승선검색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농림수산식품부 자료(2008), 1쪽 참조.

한편, WCPFC는 2006년 말 구체적인 공해상 승선검색절차(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를 채택하고 2008년 5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¹⁵²⁾ WCPFC 협약 제26조 및 WCPFC 승선검색절차 제 13(2)항에 따라, 공해상 승선검색은 협약 당사국 소속 검색선으로 위원회에 공식 등록·공시된 당사국 정부선박만이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 경비정이나 해군 군함 등이 이에 포함되며 어선이나 상선 등은 승선검색 임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3절 해상 법집행조치로서 무력사용의 성격

국제법상 ‘무력의 사용(use of force)’이란 용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 및 유엔해양법협약 제301조에서 “무력사용의 위협 또는 무력의 사용(any threat or use of force)”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군사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영해 및 접속수역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자국의 관세법이나 어업관계법 등의 국내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소위 ‘법집행조치(law enforcement)’의 일환으로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력의 사용(use of forc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¹⁵³⁾

이러한 양 개념은 그 성격에 따라 수반되는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인 기준의 유사함으로 인해 실제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무력사용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성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52) 박현진, “공해 어업과 공해상 승선검색절차”,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제1호 (2008), 198쪽.

153) 이용희,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137-138쪽.

1.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가. 유엔헌장 제2조 4항

유엔은 유엔헌장 전문과 제1조 제1항¹⁵⁴⁾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유엔의 설립목적 및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관한 분쟁의 해결 역시 헌장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통해 평화적 수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헌장은 제2조 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국가들의 무력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상기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엔헌장은 ‘전쟁’ 대신 ‘무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무력의 사용·위협 모두를 금지함으로써 무력사용금지 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¹⁵⁵⁾ 이러한 무력사용금지에 관한 내용은 헌장 전문에서도 이미 언급하고 있다.

유엔헌장은 동조 제6항에서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국이라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하다면 유엔헌장상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원칙적으로 무력사용을 금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국제관습법을 선언하는 것임과 동시에 강행규범(*jus cogens*)의 하나로 인정한 것으로 여겨진다.¹⁵⁶⁾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 이와 같은 유엔헌장상의 무력사용금지에 관

154) 유엔헌장 제1조 제1항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155) 이한기, 「국제법강의」(서울: 박영사, 2002), 689-691쪽.

156) 김대순, 전거서, 316쪽.

한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즉, 협약 제301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해가 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threat or use of force)’의 의미

(1) 무력(force)의 개념 및 범위

유엔헌장 및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force’의 의미에 대해서는 오로지 무력(armed force)으로만 보는 선진국의 입장과 경제적 위압(economic coercion)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개도국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였다. 그러나 1970년의 우호관계선언(Declaration on Friendly Relations) 제1원칙과 1974년의 침략정의선언(Declaration on the Definition of Aggression), 1987년의 무력의 위협 혹은 사용 자제 원칙에 관한 유엔선언(Declaration on the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Refraining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 등에서 직접적인 무력사용(direct use of force)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무력사용(indirect use of force), 즉 무력에 버금가는 경제적 위압과 협박까지 유엔헌장과 유엔결의로 금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⁵⁷⁾

그러나 유엔헌장 전문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armed force)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고, 유엔헌장을 작성한 1945년의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제조치의 위협 또는 사용(threat or use of economic measures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도 금지시키기 위한 브라질의

157) 상계서, 315쪽; 장신, “국제법상 무력행사금지의 원칙과 자위권”,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2007), 177쪽.

수정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엔헌장 제2조 제4항과 유엔 해양법협약 제301조의 'force'는 결국 '무력(armed force)'에 국한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⁵⁸⁾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Nicaragua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즉, 미국이 니카라과 영해에서 기뢰부설, 항만 및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공격은 물론 반정부활동을 하고 있는 콘트라에 대한 지원이 모두 '무력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반정부군 콘트라에 대한 무장과 훈련 지원은 무력사용의 예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자금지원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무력사용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⁵⁹⁾

(2) 무력사용의 형식

무력의 사용은 크게 ① 무력공격/무력침략(armed aggression/armed attack), ② 무력공격 내지 무력침략에 이르지 않은 적대행위(hostilities short of war, 예를 들어 일시적 국경 침공·침입·침투 등), ③ 간접적 무력사용 내지 간접침략(indirect aggression)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⁶⁰⁾ 여기서 무력공격 또는 무력침략이란 군사력을 이용하여 타국의 정치적 독립·영토보전을 침해하는 직접적 무력행사를 말하고,¹⁶¹⁾ 간접 공격 또는 침략이란 반도단체에 대한 무기 제공·지원을 통한 내전 지원·교사 등을 의미한다.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의 규정에서 '타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 기타 유엔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금하고 있고, 위와

158) 상개논문.

159)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Judgement of 27 June 1986, ICJ Reports(1986), (hereinafter: *Nicaragua case*), para. 228.

160) 박현진,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미국의 국가실행”, 「국제인권법」, 제6호(2003), 24쪽.

161) Peter Malanczuk, *op. cit.*, p. 309.

같은 직·간접적인 무력공격은 흔히 전쟁으로 직결될 수 있는 바, 따라서 유엔헌장과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력의 사용은 결국 군사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무력사용금지의 예외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은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헌장에서는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자위권(self-defence)과 유엔안보리에 의한 강제조치의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중 무력사용을 수반하는 안보리의 강제조치(헌장 제7조, 제42조~제46조) 및 안보리의 승인을 얻은 지역적 기구의 강제조치(헌장 제53조)와는 달리 유엔헌장 하에서 국가의 무력사용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자위권이 유일하다. 유엔헌장은 제51조에서 다음과 같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 헌장의 그 어떤 규정도,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언제든지 취할 이 헌장 하의 그의 권한과 책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상기 규정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는 필요성(necess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이 요구된다. 이러한 자위권 행사의 요건은 ICJ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국제관습법에서 확립된 하나의 특별한 규칙에 의하면, 무력공격에 ‘비례’하고 또 그것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들만(only measures which are *proportional* to the armed attack and *necessary* to respond to it)

이 자위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¹⁶²⁾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Oil Platforms 사건에서도, 자위권에서 요구되는 ‘필요성’의 요건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것이어서 그 어떤 재량적 조치를 위한 여지를 남겨 두고 있지 않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였다.¹⁶³⁾

2.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력사용과의 구별

가. 구별의 필요성

해상에서 법집행조치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동 조치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또는 무장하여 반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는 곧 법집행과정에서의 무력행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효과적인 법집행조치의 실시를 위해 경찰력의 행사로서 사용되는 무력이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력사용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관계에서의 무력사용의 범주를 해상에 적용하면 결국 비슷한 조치를 수반하게 되어, 실제로 양자의 구별이 쉬운 것은 아니다.¹⁶⁴⁾

나. 구별의 기준

외국선박의 국내법령 위반에 대한 국내 경찰력행사와 국제법상의 무력사용은 일반적 기준의 유사함으로 인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즉, 해상에서의 법집행조치가 주로 해군 또는 해양경찰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과 함포나 기관총 또는 소총 등의 무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행위의 주체 및 수단의 동일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기준들을 통한 구별을 시도해 볼 수가 있다.

162) *Nicaragua case*, para. 176.

163) 김대순, 전거서, 1236쪽.

164) Patricia Jimenez Kwast, *op. cit.*, p. 58.

(1) 집행주체

먼저, 해당조치를 취한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성격의 무력사용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해상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는 기본적으로 해군과 해양경찰이 해당될 것이다. 우선 경찰력과 군사력이 모두 안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직무에 의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력의 전통적인 역할은 외부의 무력위협에 맞서 자국을 지키려는 군대의 기본적인 임무와는 상당히 다르다.¹⁶⁵⁾ 따라서 국제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력을 군사력으로 이해한다면 해당 무력사용의 주체가 해군이냐 해양경찰이냐에 따라 그 성격을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의 해군의 경우 해양경찰의 임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엔해양법협약은 군함에 해양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집행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군함에 의해 정선 및 승선이 행해졌을 경우, 이는 해양경찰이 임무를 수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무력이 행사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주체로 양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2) 해당 선박의 지위

무력사용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지위에 따라서도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제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조치를 인정하는 반면에,¹⁶⁶⁾ 원칙적으로 군함을 포함한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집행관할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¹⁶⁷⁾ 즉, 연안국의 공무원은 함장의 동의가 없이는 외국군함에 들어갈 수 없고 연안국의 집행권·사법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165) *Ibid.*, p. 72.

166) Alfred H. A. Soons, *op. cit.*, pp. 8-16.

167) 유엔해양법협약 제32조, 제95조, 제96조, 제236조.

점에서 군함은 불가침권 및 관할권면제를 누린다.¹⁶⁸⁾ 그 결과 군함은 기국 이외에는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검색·나포·간섭 등 일체의 집행관할권에서 면제된다.¹⁶⁹⁾ 따라서 사인(私人), 범죄단체 및 상선과 어선과 같은 기타 비정부단체들이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법 및 행정법을 집행하는 통상적인 경찰력의 행사는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국가 간의 관계에서의 무력사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¹⁷⁰⁾

그러나 단순히 해당선박의 지위만으로 무력의 성격을 결정하기에는 역시 무리가 있어 보인다.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해서 무력사용이 인정되는 유일한 경우는 국제법상 자위권에 의하여 무력을 행사했을 때이다. 따라서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은 그 합법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 성격을 국제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력사용을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선 및 어선과 같은 선박들도 외국 군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안국 경찰력의 적법한 범위 밖에 있을 때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과 유엔해양법협약 제301조에 기초하여 무력사용을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¹⁷¹⁾ 즉, 해당선박의 지위보다는 해당선박이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행사된 무력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판단된다.

(3) 위치와 관할권

무력사용이 행해진 해역의 위치와 그 해역에서의 관할권 문제 역시 해상에서 행사된 무력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해양관할권(maritime jurisdiction)의 적법한 행사는 국제법상 정당한 입법 및 집행관할권을 전제로 한다. 각국은 자국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168) 강영훈, “잠수함의 국제법상의 지위”, 「해양연구논총」, 제12집(1994), 186-188쪽.

169) James R. Van de Velde, "Neither Confirm nor deny, At Sea Still Alive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Naval Law Review*, vol.45(1988), p. 268.

170) T. D. Gill, "The Forcible Protection, Affirmation and Exercise of Rights by States under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Netherlands Yearbook International Law*, vol.13(1992), p. 122.

171) Patricia Jimenez Kwast, *op. cit.*, p. 84.

이 미치는 국가관할해역에서 외국선박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국내입법을 할 수 있는 입법관할권과 이에 따른 집행관할권까지 인정받고 있음은 주지한 바와 같다. 또한 임검권 및 추적권 등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 국가는 국가관할외측해역에서도 외국선박에 대해 법집행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적법한 집행관할권에 의한 무력조치는 법집행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¹⁷²⁾ 이와는 반대로 어떠한 관할권도 없는 상황에서 행해진 무력조치는 법집행조치로서의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¹⁷³⁾ 한 예로 분쟁해역에서 당사국들이 상대국이나 제3국의 선박에 가하는 무력조치를 포함하여,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 해상 법집행권의 행사와 해군의 순찰활동에 관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이다. 이와 같은 분쟁해역에서의 무력사용은 단순한 법집행조치로서의 행위가 아닌 자국의 영토보전을 위한 무력행사로 인식될 수 있어 당사국간의 충돌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4) 무력의 강도



외국선박에 비교적 약한 무력을 행사했을 경우, 이를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제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력사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도 매우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많은 국가들이 해상에서의 경찰력 행사로써의 무력사용을 해당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에,¹⁷⁴⁾ 이에 대한 구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Nicaragua case*에서 ICJ는 무력 공격을 구성하는 유형인 무력 사용의 가장 중대한 형태의 무력사용(the most grave forms of the use of force)과 그보다는 낮은 강도의 무력사용(less grave forms of the use of force)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다.¹⁷⁵⁾ 결국 무력공격에 이

172) G. Marston, "Maritime Jurisdiction", *Encyclopa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3(1992), p. 316.

173) T. D. Gill. *op. cit.*, p. 121.

174) C. H. Allen, *Maritime Counterproliferation Operations and the Rule of Law*, (London: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2007), p. 137.

르는 정도의 무력사용은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력사용으로 파악하고, 그보다 낮은 정도의 무력사용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그 기준을 판단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양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보다는 국제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력사용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의 기준을 통한 양 개념의 구분은 모두 명쾌한 답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해상에서의 법집행과정에서 행사된 무력사용과 국제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력사용과의 구별은 결국 해당조치를 취한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기준을 통해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위반하거나, 유엔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라는 유엔헌장 제2조 4항의 표현을 다시 살펴보면,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손상을 입히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력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⁶⁾ 예를 들어 해적행위 또는 무허가방송 등의 혐의가 있는 선박의 탑승 및 검사, 그리고 나포 등의 과정에서의 무력사용은 해당 선박이 기국 영토의 관련된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조치가 기국의 정치적 독립을 손상시킬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유엔헌장 제2조 4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¹⁷⁷⁾ 이와 더불어 해상 법집행과정에서의 무력사용은 관련법령의 위반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국제협약 및 기타 다른 방식으로 특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집행조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Nicaragua case*에서 ICJ는 우호관계선언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는 타

175) *Nicaragua case*, para. 191.

176) Douglas Guilfoyle, “Interdicting vessels to enforce the common interest: Maritime countermeasures and the use of forc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56(2007), p. 79.

177) S. Kaye,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in the Maritime Domain”, *Israel Yearbook on Human Rights*, vol.35(2005), p. 218.

국의 국경을 침해하거나, 영토분쟁 또는 국경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삼가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¹⁷⁸⁾ 즉, ICJ 역시 어떠한 목적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그 허용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는 무력을 사용하게 된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에 따라 무력사용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때 무력사용을 취하게 된 목적은 집행권자, 즉 무력을 행사한 국가에서 입증해야 될 사안이다.

다. 관련사례 분석

(1) 'U.S.S. Pueblo' case

(가) 사건개요

1968년 1월 23일 북한 영해부근에서 활동 중이던 미 해군 정보수집선 Pueblo호가 북한 영해침범을 이유로 북한 해군에게 강제 나포되었다. 동 과정에서 북한 구축함과 공군 전투기인 MIG기에 의해 사격이 가해져 Pueblo호에 승선 중이던 선원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Pueblo가 나포된 해역은 북한 연안으로부터 16해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미국은 Pueblo호가 12해리 밖에 위치하였으며¹⁷⁹⁾, 또한 사건 발생 해역의 위치와 관계없이 군함은 나포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지위를 향유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Pueblo호가 간첩행위를 위해 북한 영해를 침범하였으며 자위권 행사차원에서라도 나포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결과 북한은 미국 승무원들을 수개월 동안 억류함과 동시에 Pueblo호의 행위가 간첩행위

178) “[e]very State has the duty to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to violate the existing international boundaries of another State or as a means of solving international disputes, including territorial disputes and problems concerning frontiers of States.”, *Ibid*.

179) 당시 미국은 3해리 영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12해리의 영해를 인정하지 않던 국가였다. 반면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을 뿐이다. 김영구, 전제서, 193쪽.

였음을 미국이 승인한다는 양국의 합의가 도달된 1968년 12월 23일, 11개월 만에 승무원들을 석방하였다.¹⁸⁰⁾

(나) 사안의 분석

동 사건은 외국 정부선박의 나포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미 정보수집선 Pueblo호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음에도 북한 해군에 의해 강제 나포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강제 나포 행위의 정당성을 법집행조치가 아닌 자위권과 안보 필요성에 기초하여 주장하였다.¹⁸¹⁾ 이에 대해 미국은 Pueblo호가 단지 두 대의 기관총 소유로 인해 즉각적인 무력공격의 위협(immediate threat of armed attack)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외국군함에 대한 나포나 다른 공격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매우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dangerous and provocative acts)’라고 주장했다.¹⁸²⁾ 즉, 북한과 미국 양국은 모두 북한 해군이 Pueblo호에 가한 무력사용의 성격을 국제법상 무력사용으로 본 것에는 일치하였으나, 해당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Pueblo호는 북한 연안으로부터 16해리 지점에서 나포되었는데, 북한의 12해리 영해를 Pueblo호가 침범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북한은 당시 비공식적으로 12해리 영해를 주장하였을 뿐 1958년 영해협약 제4조 제6항 등에 준하는 어떤 종류의 영해범위의 공식도 없었다.¹⁸³⁾ 따라서 당시

180)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 승무원이 석방된 후 이들이 인정한 간첩행위 혐의사실을 즉시 부인하였다. 김현수, “신해양법상 군사활동과 무력사용의 한계”, 「해군전략」, 제94호(1997), 183쪽.

181) G. H. Aldrich,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Raised by the Seizure of the U.S.S. Pueblo",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63(1969), p. 4.

182) Charels I. Bevans, "Contemporary Practice of the United States: Telegram from Secretary of State Rusk to all Diplomatic Posts, February 8, 1968",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62(1968), p. 757.

183) 1958년 영해협약 제4조 제6항은 “연안국은 직선기선을 해도 상에 명백히 표시하고 정당히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상 어떠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Pueblo호가 나포된 해역은 공해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북한 해군의 행위는 공해상에서 타국군함에 국제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력사용, 즉 군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Guyana/Suriname’ case

(가) 사건개요

2000년 6월 3일 자정 무렵, 가이아나와 수리남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륙붕에서 대륙붕 굴착작업을 하고 있던 ‘C.E. Thornton’호에 수리남 해군군함 2척이 접근하여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수리남의 해역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C.E. Thornton’호는 캐나다가 임차하여 가이아나로부터 자원개발면허를 받은 미국 선적의 시추시설이었다. 수리남 해군군함은, ‘C.E. Thornton’호가 수리남 해역에서 들어와서 수리남 정부의 허가 없이 대륙붕 탐사용 굴착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수리남 해역에서 철수라고 요구하였다.¹⁸⁴⁾ 이에 대해 수리남 해역에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C.E. Thornton’호가 응답하자, 수리남 해군군함 사령관은 퇴거명령을 반복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시추선을 공격할 의도는 없지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였다. 비록 수리남 해군군함의 공격 의사는 없었지만, ‘C.E. Thornton’호는 수리남 해군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철수시간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한 뒤 철수를 시작하였다.¹⁸⁵⁾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에 따라 가이아나의 일방적 제소로 유엔해양법협

184) “This is the Suriname Navy. You are in Suriname waters without authority of the Suriname Government to conduct economic activities here. I order you to stop immediately with these activities and leave the Suriname waters.” Rejoinder of Suriname(Vol. I), paras. 4.46-47 and (Vol. II), Annex 19 (Statement of Captain Martin Galong), para. 7 and Annex 20 (Statement of Major John Paul Jones), para. 7.

185) Patricia Jimenez Kwast, *op. cit.*, p. 50.

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에 2004년에 부탁되어¹⁸⁶⁾, 2007년 9월 17일 판결이 내려진 동 사건은 전체적으로 재판소의 관할권 문제, 영해경계확정 문제와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에 관한 확정 문제, 그리고 분쟁지역 내에서 발생한 위협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다.

(나) 당사국 주장

동 사건에서 가이아나는 해양경계확정이외에 수리남이 가이아나의 영토적 일체성에 대하여 군사력을 사용함으로써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선언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와 같은 가이아나의 주장에 대하여 수리남은 2003년 6월 3일 자국 해군함정이 취했던 조치는 무력사용의 위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대륙붕에 대한 관할해역분쟁지역에서 허가 받지 않은 시추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리적이고도 균형감있는 법집행조치의 성격(the nature of resonable and proportionate law enforcement measures)’을 지닌다고 항변하였다.¹⁸⁷⁾

(다) 쟁점 및 판결 검토

동 사건에서는 어떠한 무기의 사용 및 총기 발사도 없었고 인명 피해조차 없었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무력사용에 관한 논의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해상무력조치(forcible action at sea)의 국제법적 범주를 고찰한다는 점에서 보면 동 사건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중재재판소는 우선 국제법상 불가피하며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우 법집행활동에서 무력사용은 가능하다고 확인하면서도,¹⁸⁸⁾ 수리남이 2000년 6월 3일 행한 조치는 단순한 법집행조치라기 보다는 군사

186) 유엔해양법협약 제286조에 의해 어느 한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동 협약 제287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소에 회부된다.

187)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 in the Award of 17 September 2007 (hereinafter: 'Guyana/Suriname Award'), para. 269.

188) *Ibid.*, para. 445.

행동의 위협에 보다 가까운 것이며,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및 유엔헌장, 그리고 일반 국제법에 위반되는 무력사용의 위협에 해당된다고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렸다.¹⁸⁹⁾ 즉, 중재재판소는 수리남 해군의 행위가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명백한 위협(explicit threat)’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¹⁹⁰⁾ 그 성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강도(less grave forms)’의 무력(armed force)행사로써 군사행동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⁹¹⁾ 그리고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수리남 해군의 반복된 명령을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수리남 해군이 ‘C.E. Thornton’호와 보조선(support vessel)에게 무력(armed force)을 사용할 것”으로 이해했다는 시추관리자(Rig Supervisor) Edward Netterville의 증언을 들었다.¹⁹²⁾

이에 대해 수리남은 수리남의 허가 없이 수리남 해역에서의 어업 및 채굴 활동을 금지하는 수리남 국내법을 근거로 들며, 수리남 해군이 취한 조치는 연안관리해역에서 법집행조치로서의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반박하였다.¹⁹³⁾ 수리남 해군이 위협적인 표현과 더불어 분명하지 않은 경고를 행한 점이 과연 수리남 국내법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인지는 의문스러울 수도 있으나, 동 조치가 허가받지 않은 채굴활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통상적인 해상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해역이 가이아나와 수리남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륙붕이었다는 점에서, 수리남 해군이 취한 조치는 분쟁지역에서의 무력사용의 위협행위이기에 정당한 법집행조치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가이아나의 대통령과 수리남의 대통령이 접촉했던 사실 역시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이던 2000년 6월 2일 양국 대통령간의 전화통화에서 수리남 대통령은 가이아나 대통령에게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시추활동을 하지 말도록 지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리남은 ‘자국의 영

189) *Ibid.*, para. 488.

190) *Ibid.*, para. 439.

191) Patricia Jimenez Kwast, *op. cit.*, pp. 60-61.

192) *Guyana/Suriname Award*, para. 433.

193) Patricia Jimenez Kwast, *op. cit.*, pp. 78-79.

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action to protect its territory)’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양국 대통령간의 협상은 실패로 끝이 났고, 이에 수리남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해군에게 알리며 ‘시추선에게 수리남 해역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하라’는 지시를 내렸다.¹⁹⁴⁾ 이 과정에서 수리남 대통령이 언급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하겠다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역시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i) 수리남 대통령과 해군 고위관리가 긴밀하게 관여한 점, ii) 수리남 해군의 목적이 ‘주권의 긴박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점, iii) 해당 조치가 무력분쟁상태로 발전될 실제적인 위협이었다는 것을 수리남 해군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¹⁹⁵⁾ 등을 고려하면, 수리남 해군의 행위가 단순한 해상 범집행조치를 넘어선 국제법상 무력사용의 위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해상 범집행조치로서 무력사용의 국제관습법화 여부

가. 국제법상 국제관습법의 일반내용

(1) 관습의 개념 및 요건

국제법의 법원(法源)을 열거하고 있는 ICJ 규정 제38조 제1항은 국제관습을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수평적 법질서 하에서 입법자(law-makers)와 수법자(law-addressees)가 모두 국가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국제관습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사가 개입된 국가관행을 그 형성요소로서 필요로 한

194) *Ibid.*, p. 81.

195) 실제로 수리남 공·해군 사령관은 수리남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후 전군참모회의를 가진 뒤, 해당 조치를 실시하도록 임무가 부여된 선박의 선원들에게 “발포는 곧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고, 수리남은 전쟁을 원치 않기에 따라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Ibid.*

다. 또한 ICJ 규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국가들의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of states*)을 국가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한다는 법적확신(*opinio juris*)의 존재를 국제관습이 성립되기 위한 다른 요건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제관습의 두 가지 성립요소에 대해서는 ICJ가 *Libya-Malt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비록 다자조약들이 관습으로부터 유래하는 규칙들을 기록하고 분명히 함에 있어 또는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겠지만, 국제관습법의 소재를 일차적으로 국가들의 실제관행과 법적확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¹⁹⁶⁾

한편,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서 일반관행이 되기 위해서는 관행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보편적·일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 때 반드시 모든 국제법 주체에 의한 관행이 존재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국제법 주체를 포함하는 다수의 국제법 주체에 의한 광범위하고 통일적인 관행이 존재하며, 그 관행의 성립에 반대하는 행위가 적극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한 성립된다고 본다.¹⁹⁷⁾ 이와 같은 국가관행의 증거는 조약, 외교서한, 정책천명, 보도자료, 정부법률고문관들이 국내외의나 국제회의에서 제시한 의견, 정부의 공식편람(*official manual*), 국내입법, 국내 상급재판소의 판결,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 제시한 조약 초안에 대한 국가의 코멘트, 국제기구(특히 유엔총회)에서의 국가의 투표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¹⁹⁸⁾

(2) 국제관습법의 지위 및 효과

국제관습법은 조약보다도 역사적으로 선행하며, 오늘날 아직도 국제법의

196)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 v. Malta)*, ICJ Reports(1985), paras. 29-30.

197) 이병조·이중범, 전거서, 46-47쪽.

198) 김대순, 전거서, 49쪽.

많은 분야가 관습법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국제관습이 성립하기 위한 국가관행은 보편적일 필요가 없음에도 일단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보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제법주체를 당연히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법적확신을 가지고 법규범으로 수락한 국제법주체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국제관습법의 형성과정 중 또는 형성 후에 국제관습법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국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¹⁹⁹⁾

나. 해상 법집행조치로서 무력사용의 국제관습법적 지위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이며 지속적으로 행해진 국가관행이 법적확신을 수반하면 국제관습법으로써의 요건을 충족시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만약 해상에서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써 행사하는 무력사용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다면, 이 역시 무력사용이 정당한 행위였음을 주장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해상에서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사례는 1929년에 발생한 I'm Alone호 사건²⁰⁰⁾을 시작으로 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우선 국가관행이 지속적이어야 함과 관련하여, 일관성과 일반성이 입증되면 특별한 지속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나치게 오랜 관행이거나 장시간에 걸친 관행일 필요는 없다는 점²⁰¹⁾에서 해상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이 국제관습으로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련사례들에 대한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및 사건 당사국들의 태도를 통해 살펴보면 국제관습법의 나머지 요소인 법적확신 역시 성립된 것으로 보아진다. 물론 해당사례들에서 국제사법기관들은 무력을 행사한 국가들이

199) 이병조·이중범, 전거서, 47-48쪽.

200) I'm Alone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제4장 제2절 참조.

201) Ian Brownlie, *Public International Law*(6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7.

무력사용으로 인해 타국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무력사용이 합법적인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한 권리침해로 본 것이다. 피해국들 역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그 범위가 과도했음을 이유로 해당 무력사용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즉, 당사국 및 국제사법기관들 모두 무력사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해상에서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 행사되는 무력사용은 국제관습법으로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허용성의 문제와 정당성의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국제관습법적으로 인정받은 무력사용이 정당성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사용기준 및 범위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4절 소결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해상테러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폭력성으로 인해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타국 관할해역에서 불법어업에 종사하는 일반 어선조차도 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심지어 선원들이 총기류 등으로 무장하여 단속에 저항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법집행과정에서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관할해역 또는 국가관할외측해역에서 국가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집행조치의 유형으로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무력행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해당 해역의 설정 목적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 행사는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서의 무력사용은 허용된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국제법상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기에 해상 법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로써 적법하게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 및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력의 성격과의 구분이 필요하다. 앞서 양 개념의 구분 기준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았으나, 결국 무력사용의 성격은 행위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유엔헌장 및 유엔해양법 협약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타국의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유엔헌장의 목적’에 상반되는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은 그 목적상 국제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력에 해당되고,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상 규정에 따라 특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무력사용은 해상에서의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서의 행사된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상 법집행과정에서 사용된 무력이라는 것의 입증은 해당 법집행주체가 해야 하는 것으로, 무력을 사용하게 된 근거규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 본 ‘Guyana/Suriname’ case에서, 국제법상 불가피하며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우 법집행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동 사건에서 수리남이 취한 조치는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action to protect its territory)’이므로 이는 법집행조치라기 보다는 유엔헌장 및 유엔해양법 협약에 위배되는 군사력에 해당한다고 중재재판소가 내린 결정과도 일치한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무력사용이 가능하고, 그 기준과 정도는 어떠한지의 문제는 무력사용이 허용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각의 사안별 분석을 통해 제시된 조건에 따라 무력을 사용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4장 해상에서의 범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요건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해상 범집행과정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은 유엔헌장 및 유엔해양법협약 등의 일반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력사용과는 다른 성격의 행위이며, 따라서 적법하게 인정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범집행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법하게 무력사용을 하더라도 그것이 과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에 있어서의 기준 및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제1절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기준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및 국제법적 태도 분석



해상에서의 범집행시 무력의 사용은 범집행국가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행사되는 것으로서 무력사용의 정당성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상 범집행조치를 위한 무력의 사용시점과 그 사용정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경우 국가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법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²⁰²⁾ 즉, 국내법이 비록 무력사용을 허용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용이 국제법상 허용하고 있는 무력사용의 조건과 정도에 일치하여야 한다.²⁰³⁾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양이라는 공간이 국제법이 근본적으로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범집행조치를 수행하는 관리에게는 무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범집행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것 이상의 문제의식이 요구되고 있다.²⁰⁴⁾

202) 이용희, “연안국 범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138쪽.

203) D.P. O'Connell, *op.cit.*, pp. 1062-1063.

1. 법집행시 무기사용의 기준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가. 경찰관 직무집행 시 총기사용에 관한 입법례

(1) 미국

미국 법원은 1980년대 초까지 영국의 Common Law에 따라 경찰의 체포를 피해 달아나는 중범죄인에 대하여 경찰이 총기 등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1989년 미 연방대법원의 Graham v. Conner case를 계기로 하여, 경찰관의 물리적 행사는 구체적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찰관의 시각에서 판단하되, 즉각적인 판단이 강제되는 경찰관 근무환경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objective and reasonableness)”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²⁰⁵⁾

미국 국가 차원에서의 총기 사용에 대한 기준은 미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과 국제경찰장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가 제시하고 있는 총기 사용에 관한 수칙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먼저, FBI요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를 위해서 총기 사용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²⁰⁶⁾ 다음으로, 회원국 경찰 상호 간의 친선 도모와 각종 정보 교환, 경찰 교육 훈련 등 경찰 협력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1893년에 구성된 IACP에서는 총기사용의 기준에 대하여, 아무리 중대한 범죄일지라도 단순한 혐의로 인한 치명적인 실력행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범인의 협박이 치명적이거나 또는 시간의 지연으로 인하여 범인의 체포가 어렵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하리라고 믿어지는 경우에만 그러한

204) Ibid.

205) 김양수, “경찰관 총기사용에 관한 법적 검토”, 「검찰 통권」, 제115호(2004), 261쪽 참조.

206) 1981년 FBI 법률편람 Hand-book 제3222항.

실력행사는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⁷⁾

종합해보면, 미국에서는 경찰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행범 및 도주하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요건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총기사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영국

영국경찰은 일반경찰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특별경찰로 구분되어 지는데, 일반경찰의 경우 통상적인 근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 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총기휴대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특수순찰대(Special Patrol Group; SPG), 외교경찰(Diplomatic protection Group), 원자력경찰(Atompolice) 등으로 나뉘는 특수경찰에 대해서는 총기휴대가 상시 허용되고 있다.²⁰⁸⁾

영국에서 총기사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1967년 형법(Criminal Law Act)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동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범죄예방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또는 도주자의 체포 및 목적달성을 위해 그 개별상황에서 합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총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총기사용의 요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 지침을 통해 파악할 수가 있는데, 먼저 ‘총기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경찰관지침(Police Instruction for Supply and Open Fire)’에서는 생명에 대한 침해의 발생이나 학대의 방지와 같은 적법한 목적을 위한 총기사용을 인정하면서, 이 경

207) 김기재, “주요국가의 경찰상 무기사용에 관한 고찰”, 「비교법학연구」, 제5권 (2005), 49-50쪽.

208) 상계논문, 52쪽.

우 다른 수단을 사용하였더라도 목적달성에 실패한 경우 또는 상황에 비추어 다른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확신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총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²⁰⁹⁾

1972년 ‘북아일랜드 치안군의 총기사용에 관한 지침(Instruction by the director of Operations for Open Fire in North Ireland)’에서는 총기사용의 대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동 지침에서 총기발포가 가능한 대상²¹⁰⁾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에 대한 총기의 사용은 정지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치안군 자신 또는 치안군의 보호를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에 작성된 ‘북아일랜드에서의 발포에 관한 지침(Instruction for Opening Fire in North Ireland)’에서도 사람에 대하여 발포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²¹¹⁾하고 있는데, 이 역시 총기는 항상 필요최소한(the minimum force necessary)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최후의 수단(as a last resort)으로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²¹²⁾

209) 윤삼영, “경찰관 총기사용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7, 29쪽.

210) 1972년 ‘북아일랜드 치안군의 총기사용에 관한 지침’에서는 ① 총기로 의심되는 물건을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자가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않으며 다른 수단으로는 정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그 총기 소지자, ② 치안군이나 민간인 또는 재물에 대하여 화염병공격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화염병공격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자, ③ 재물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거나 총기·폭발물을 절취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자, ④ 공격을 실행중이지 않더라도 치안군이나 치안군의 보호를 받는 자를 살해 또는 중상해한 후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는 체포할 수 없는 자, ⑤ 치안군 자신이나 치안군의 보호를 받는 자가 살해나 중상의 위험으로부터 방어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을 사전경고에 이어 총기를 발포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11) ‘북아일랜드에서의 발포에 관한 지침’에서는 ① 생명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하려고 하는 경우(구체적으로 총기를 발사중이거나 발사하려고 하는 경우, 화염병 포함한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투척하는 경우, 고의로 사람을 향하여 자동차를 모는 자를 정지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②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부상시킨 자에게 수하를 하였으나 저항을 계속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자를 체포할 수 없는 경우에 사람에 대해 발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2) 윤삼영, 전제논문, 29쪽.

(3) 독일

독일에서는 통일경찰법모범초안을 통해 총기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총기사용의 요건을 총기사용 전 경고,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총기사용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총기를 사용할 시에도 물건에 대한 총기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사람에 대한 총기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²¹³⁾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찰의 직접강제는 그 시행에 앞서 계고 내지 경고가 행해져야 하는데, 이러한 총기사용의 경고는 생명·신체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생략될 수 있다.²¹⁴⁾ 그리고 “총기는 직접강제의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총기사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통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총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²¹⁵⁾ 또한 사람에 대한 총기사용은 물건에 대한 총기사용에 의하여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는데,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 도주범 및 중죄인의 체포를 위한 경우, 그리고 경죄를 범한 죄인이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서만 사람에 대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²¹⁶⁾ 마지막으로 14세 미만의 자에 대한 총기사용²¹⁷⁾이나 비관여자에게 위험을 주는 총기사용²¹⁸⁾은 금지하고 있다.

213)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3조.

214) 상계법률 제39조 제2항.

215) 상계법률 제41조.

216) 상계법률 제42조.

217) 상계법률 제41조 제3항.

218) 상계법률 제43조.

(4) 일본

일본에서는 소형무기를 포함한 경찰의 무기²¹⁹⁾사용에 관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동조에서는 ①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②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방호, ③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의 억지를 위하여, ④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⑤ 그 사태에 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람에게서 위해를 가하지 않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⁰⁾

한편 사람에게서 위해를 가하는 무기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일본 형법 제36조의 정당방위와 제37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 ① 사망 또는 무기·장기 3년 이상의 징역·구금에 해당하는 흉악한 죄를 범하였거나, 이미 범했다고 의심이 가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혹은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 자를 사망하게 하려고 경찰관에게 저항할 때, 이것을 방지하고 체포하기 위해서는 그 밖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체포장에 의해 체포하는 중 또는 구인장 혹은 구류장을 집행하는 중, 그 본인이 그 자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혹은 도망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망하게 하려고 경찰관에게 저항할 때 이를 방지하고,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그 밖의 수단이 없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²²¹⁾

219)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서 말하는 무기의 개념은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목적으로 제작된 도구나 기계”라고 하여 권총, 소총, 칼, 검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김연태, “범죄진압장비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20집(2004), 65쪽.

220)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본문.

221) 상계법률 제7조 단서.

(5)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관 총기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무기사용의 허용 여부 및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무기’의 개념에 대해서 동법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²²⁾ 이러한 무기의 사용은 ①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관에게 인정하고 있다.²²³⁾

다만,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경우와 다음의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②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22)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 제2항.

223) 상계법률 제10조의 4 제1항.

- ③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④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찰관 직무집행상 인명에 위해를 주는 무력의 사용에는 일반적인 무기사용에 대해 요구되는 비례성외에 필요성(necessity)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²⁴⁾

한편, 이러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무기사용에 대하여 절차적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동 규정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향하여 총기를 사용할 시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⁵⁾ 다만,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경고 없이 총기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²²⁶⁾ 이밖에도 동 규정 제10조에서는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신체·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총기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나. 해상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입법례

해상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은 주로 각국의 해군이나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 공무원들에게도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224) 이용희,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139쪽.

225)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226) 상계규정 제9조 단서.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해군 또는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을 할 때 무력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다만 해상에서의 법집행과 관련하여 무기사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입법례는 발견할 수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 관세법(법률 제9709호)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선박 등에 대하여 임검 또는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²²⁷⁾ 동법 제267조 제1항에서는,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기를 휴대한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특히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와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²²⁸⁾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 관세법은 제121조에서, 세관직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임검, 수색 또는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²⁹⁾ 무기와 관련해서는 동법 제104조 제1항에서, 세관직원은 화물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단속 또는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때에 특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분간 소형의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관직원은 이와 같은 단속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그리고 공무의 집행에 대한 저항의 억제를 위하여 부득이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 그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가장 빈번한 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불법어업을 규율하는 수산업법과 EEZ 어업법은 법

227) 관세법 제300조.

228) 상계법률 제267조 제2항.

229) 일본관세법 제121조 제1항.

230) 상계법률 제121조 제2항.

집행조치를 위한 무기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거나²³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위반선박 등에 대하여 정선·승선·검색·나포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²³²⁾

다. 소결

이상과 같은 각국의 입법태도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찰관 직무집행 및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무기사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관세법·출입국관리법 등을 통하여 경찰관, 세관공무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각각 관련 법집행시 무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경찰관이라는 개념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포함되므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의 법집행시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²³³⁾

우리나라에서는 상기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도주의 방지, 공무집행행위에 대한 항거의 억제 및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경우를 무기사용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무기사용의 발동 요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한 법집행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요성을 강조한 무기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정도 역시 무기사용의 조건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정도로 제한하는 비례성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무기사용을 통한 인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기사용에 있어 사전경고를 요구하고 있다.

231) 수산업법 제73조.

232) EEZ 어업법 제23조 제1항.

233) 일본 해상보안청법 역시 제20조(무기의 사용)에서 해상보안관 및 해상보안관보의 무기사용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태도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을 근거로 한 무력사용이 국제법상 허용하고 있는 무력사용의 조건과 정도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의 경우 해상에서의 법집행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및 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유형으로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무력행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동 협약 제301조에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해가 되거나 또는 유엔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 즉 군사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법의 집행을 위하여 경찰력의 일환으로 행사되는 무력의 사용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²³⁴⁾

이처럼 해상에서 행하는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서의 무력사용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과 달리 공해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정, 유엔총회 결의 및 기본원칙 등에서는 무력사용에 대한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찾아볼 수가 있다.

가.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

1995년 공해어업이행협정은 공해상 승선검색절차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우선 제21조 제1항에서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역기구 또는 약정이 설정한 조치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타국 어선에 승선검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2조를 통하여 제21조에 따른 승선과 검색을 위한 기본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

234) 이용희,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142쪽.

고 있다.

제22조(제21조에 따른 승선과 검색을 위한 기본 절차) 1. 검색국은 정당하게 인가된 자국의 검색관이 다음과 같이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a) 선장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해당 공해상에서 시행중인 관련 보존 관리조치 또는 규칙 및 규정의 텍스트 사본을 제시한다.
- (b) 승선 및 검색 시점에 기국에 대하여 통보를 개시한다.
- (c) 승선 및 검색 도중 선장과 기국의 당국간의 교신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d) 승선 및 검색에 대한 보고서 사본을 선장 및 기국의 당국에 제공하고, 동 보고서에 선장이 포함시키기 희망하는 어떠한 반대의견 또는 진술을 기록한다.
- (e) 중대한 위반의 증거를 발견치 못할 경우, 검색 종료 직후 즉시 하선한다.
- (f) 검색관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필요한 정도, 또한 검색관의 임무수행이 방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의 사용을 피한다. 무력 사용의 정도는 해당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중 (f)호를 살펴보면 승선 및 검색과정에서의 무력사용의 발동요건 및 정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즉, 해당 검색관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검색관의 임무수행이 방해 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무력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공해어업이행협정에서의 이러한 규정은 WCPFC 승선검색절차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승선검색절차 규정 제28항에 의하면, 검색요구를 받은 어선이 도주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는 검색선이 어선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하거나(경고 사격 등) 또는 나포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공해어업이행협정 제22조 제1항 (f)호를 대체로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³⁵⁾ 또한 제37항 (k)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검색을 거부하

235) 박현진, “공해 어업과 공해상 승선검색절차”, 212쪽.

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여, 승선검색을 거부하는 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이 허용됨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보면 해당 타국 어선에 대한 승선검색과정에서 검사관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검사관의 임무수행이 방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력사용이 인정됨을 알 수가 있다.

나. 법집행 공직자의 행동강령

1979년 유엔총회 결의(34/169)²³⁶⁾ ‘법집행공직자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에서도 법집행공직자의 무기사용에 관한 국제법상 일반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동 행동강령은 제3조에서 “법집행공직자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그에 필요한 정도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⁷⁾ 이 규정에 대하여 동 조에서는 주석을 통하여, 법집행공직자의 무력사용은 예외적인 것이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무력사용을 제한한다고 강조하면서 범죄의 예방 및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의 체포를 위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무력사용이 허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무기사용은 어린이에게 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혐의자가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는 그 행위를 억제할 수 없는 경우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³⁸⁾

다. 법집행공직자의 무기사용에 관한 유엔기본원칙

1990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쿠바 하바나에서 개최된 ‘범죄예방과 범법자 처리에 관한 제8차 유엔의회(the Eighth United Nations Congress

236) UNGA, Resolution 34/169(1979).

237)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rticle 3.

"Law enforcement officials may use force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and to the extent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238)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rticle 3 commentary.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에서 채택된 기본원칙(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은 제4원칙에서 법집행공직자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능하면 무력 및 무기에 호소하기 전에 비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며, 이 경우에도 무력 또는 무기의 사용은 최후적 수단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²³⁹⁾ 또한 제5원칙에서는 불가피하게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 목적 달성에 비례한 정도로 무기를 사용할 것(Exercise restraint in such use and act in proportion to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 and the legitimate objective to be achieved), (b) 무기사용으로 인한 손해와 부상을 최소화할 것과 인명을 존중하고 보존할 것(Minimize damage and injury, and respect and preserve human life), (c) 무기사용으로 부상을 입은 자에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원조와 의료조치를 시행할 것(Ensure that assistance and medical aid are rendered to any injured or affected persons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d) 부상을 입은 자의 친척 또는 가까운 친구에게 그 사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통보할 것(Ensure that relatives or close friends of the injured or affected person are notified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6원칙에서는 무기사용으로 인하여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제22원칙에 따라서 즉시 상관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7원칙에서는 이상의 원칙을 위반한 법집행공직자를 형벌로 처벌할 것을 각국 정부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무기사용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더불어 제9원칙과 제10원칙에서는 무기사용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9원칙에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경우이외에는 사람에게 대한 무기의 사용을 금

239)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General provisions 4.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carrying out their duty, shall, as far as possible, apply non-violent means before resorting to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They may use force and firearms only if other means remain ineffective or without any promise of achieving the intended result.”

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의적인 치명적 무기사용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⁰⁾ 마지막으로 제10원칙에서는 제9원칙에 의한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집행공직자가 신분을 밝히고 무기를 사용한다는 분명한 경고를 한 다음 범죄혐의자가 그 경고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구체적 절차를 언급하고 있다.²⁴¹⁾

라. 소결

이상과 같이 법집행시 무력사용의 발동요건 및 정도에 관한 국제법적 태도 역시 각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법집행과정에서의 무력행사는 법집행권자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나 법집행권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사용정도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제한하여 최소한의 무력사용만을 인정하고 있다.

240)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Special provisions 9.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not use firearms against persons except in self-defence or defence of others against the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to prevent the perpetration of a particularly serious crime involving grave threat to life, to arrest a person presenting such a danger and resisting their authority, or to prevent his or her escape, and only when less extreme means are insufficient to achieve these objectives. In any event, intentional lethal use of firearms may only be made when strictly unavoidable in order to protect life.”

241)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Special provisions 10.

“In the circumstances provided for under principle 9,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identify themselves as such and give a clear warning of their intent to use firearms, with sufficient time for the warning to be observed, unless to do so would unduly place the law enforcement officials at risk or would create a risk of death or serious harm to other persons, or would be clearly inappropriate or pointless in the circumstances of the incident.”

제2절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사례 분석

해상에서의 무력사용은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선박과 같이 특정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선박이 그에 따른 법집행을 하려는 국가의 법집행조치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종결된 것과 제3자, 즉 국제사법기관에 의해 해결된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해상에서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서 행사된 무력은 앞서 살펴봤듯이 각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이 제시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하고 또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될 경우에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후자의 경우는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무력사용의 허용 범위에 관한 국제사법기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으로 인한 외교 분쟁 발생 사례 분석

가. 국적불명선 ‘長漁 3705’호 침몰사건

2001년 12월 22일 22시경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북서방향 약 390킬로미터 지점에서 국적불명의 선박 ‘長漁 3705’호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이나사’호의 추적을 받던 중 교전 끝에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침몰되기 전 ‘長漁 3705’호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항해하다 일본 순시선의 정선명령을 받았다.²⁴²⁾ 그러나 동 선박은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였으며, 일본 순시선이 동 선박을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추적하여 정선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순시선은 ‘長漁 3705’호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발포를 하였으며, 이에 ‘長漁 3705’호 역시 소총 및 로켓포로 공격하자, 결국 발포하여 ‘長漁

242) 이용희, “국적불명선 「장어 3705」호 침몰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139쪽.

3705'호는 폭발하여 침몰하게 되었다. 동 사건으로 인해 '長漁 3705'호에 승선한 것으로 보이는 15명 전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동 선박의 선원 2명이 사용한 총기에 의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승무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²⁴³⁾

한편, 이 사건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제2차 사이가호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라 함)가 제시한 무력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잘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선명령을 위하여 우선 시각 및 청각신호를 보냈고, 선박의 진행 방향의 상공 및 해면에 대한 경고사격을 하였으며, 선체사격 실시 이전에 선체사격부위와 그 사실에 대해 경고하였으며, 그 이후 최종적으로 선체사격을 실시하였음을 볼 때 국제관행상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여 진다.²⁴⁴⁾

나. 'Fuyuan' 132'호 나포 사건

2005년 9월 19일에는 인도네시아 해군이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불법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 'Fuyuan' 132'호에 대하여 추적권을 행사하여 나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해군은 중국 어선에 발포를 하였고, 그로 인해 선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의 선원이 부상을 당하였다.²⁴⁵⁾

중국 정부는 동 사건의 발생 즉시,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충격과 강한 유감(shock and strong dissatisfaction)'이라는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해군의 행위를 '비인도적인 행위(inhumane way of law enforcement)'로 규정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로 하여금 i) 사건의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여 중국정부에 통지할 것, ii) 부상선원의 치료와 억류 선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iii) 인도네

243) 상계논문, 153쪽.

244) 상계논문, 155쪽.

245) H. Quin, "Chinese Practice in Public International Law:2005(II)", *Chinese Journal on International Law*, vol.5(2006), p. 779

시아 해군과 관련조직이 법집행과정에서 자의적인 무력사용을 회피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iv)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²⁴⁶⁾

다. 기타 사례

1954년 11월 13일 파나마 국적의 포경 선단 ‘Onassis’ 중 몇 척의 어선을 페루 연안에서 약 110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서 페루 해군이 발견하여 추적한 끝에, 2척의 어선을 페루 연안으로부터 약 126마일 정도의 지점에서 나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다른 2척의 선박이 페루 공군과 해군의 폭격과 기관총 세례를 받은 다음 페루 연안으로부터 약 30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체포되었고, 끝으로 포경선(factory ship)인 ‘Olympic Challenger’호가 페루 연안으로부터 약 364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페루 공군기의 공격을 받았다.²⁴⁷⁾

‘Onassis’호 사건이 발생한 뒤 페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미국 참치 선박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1955년 3월 27일에는 두 척의 미국 선박 ‘Arctic Maid’호와 ‘Santa Anna’호가 에콰도르 연안에 있는 Santa Clara섬에서 서쪽으로 약 14마일에서 2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에콰도르 해안 경비선에 의해 발견되었다. 에콰도르 해안 경비선은 두 미국 선박들을 추적하여 나포하였는데, 동 과정에서 미국 선원 한 명이 총상을 당하기도 하였다.²⁴⁸⁾

1964년에는 소련 연안으로부터 16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Sister Katingo’호를 소련 연안경비대가 나포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 국적의 상선인 ‘Sister Katingo’호의 선장은 당시 소련의 Novorossisk항에서 소련당국과 언쟁을 한 후 소련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히 출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련 연안경비대가 동 선박에 대하여 총격을 가한 후 나포하게 되었

246) *Ibid.*

247) Nicholas M. Poulantzas, *The Right of Hot Pursuit in International Law*(Hague; New York: Martinus Nijhoff, 2002), p. 89.

248) *Ibid.*, p. 91.

다. 동 사건에 대하여 미국은 소련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미국 국무부 외교각서상 소련의 행위는 ‘나포를 행함에 있어 과도한 수단(an excessive method of effecting arrest)’이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²⁴⁹⁾

2.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제3자적 해결 사례 분석

가. I'm Alone호 사건

(1) 사실관계

1929년 3월 22일 캐나다 선적의 영국 스쿠너선 ‘I'm Alone’호가 미국 연안 200해리 밖에서 미국 연안경비대의 사격을 받고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미국 재무성은, ‘I'm Alone’호는 주류 밀매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선박이라고 미 연안경비대를 통하여 공식 발표하였다.²⁵⁰⁾ 동 사건에서 ‘I'm Alone’호가 미 연안경비선 ‘Wolcott’호를 만난 3월 20일 아침부터 또 다른 미 연안경비선 ‘Dexter’호의 공격에 의해 침몰된 3월 22일까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929년 3월 20일 미 연안경비선 ‘Wolcott’호는 루이지애나 근해 6.5해리 밖에서 미국의 금주법에도 불구하고 밀수를 위해 정박하고 있던 ‘I'm Alone’호를 발견했다. ‘Wolcott’호는 미국 관세법에 따른 승선과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I'm Alone’호에게 정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I'm Alone’호는 정선명령에 불복했고, ‘Wolcott’호는 1차로 ‘I'm Alone’호의 선수(船首)를 가로질러 발포를 하며 재차 정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I'm Alone’호는 또다시 불복하였고, ‘Wolcott’호는 ‘I'm Alone’호의 돛을 관통하여 발포했으나 ‘I'm Alone’호는 도주하였다. 공해로 도주한 ‘I'm Alone’호를 ‘Wolcott’호는 계속 추적하였고, 추적 도중에 미 연안경비선 ‘Dexter’호가 합세하였다.

249) D.P. O'connel, *op. cit.*, p. 1071.

250) William C. Dennis, "The Sinking of the I'm Alon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3(1929), p. 351.

‘Dexter’호는 3월 22일 아침부터 정선하지 않으면 침몰시키겠다며 공중으로 경고사격을 발포하였지만 여전히 ‘I’m Alone’호는 정선명령을 무시하였다. 마침내 ‘Dexter’호는 ‘I’m Alone’호의 선체(船體)를 향해서 수차례 총격을 가했고, 결국 ‘I’m Alone’호는 침몰하고 말았다.²⁵¹⁾ 동 과정에서 선박과 화물은 전손되었고, 선장과 선원들은, 익사한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안 경비선에 의해 구출되었다.²⁵²⁾ 이 사건으로 미국과 영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영국은 선박과 선원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양국 정부는 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각각 1명씩의 중재인을 1929년 8월 임명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와 미국정부에 배상금을 신청한 캐나다 정부의 요구를 검토하도록 중재재판에 부탁하였다.

(2) 판결검토

동 사건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주장하는 추적권 이론은 아직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추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추적은 영해로부터 개시되어야 한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른 경비선이 처음에 추적을 개시한 경비선과 교대한 경우에는 계속된 추적으로 간주할 수 없고, 추적권이 피의선박의 격침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²⁵³⁾ 이에 대해 미국은 ‘I’m Alone’호의 침몰은 미 연안경비선이 1924년 영국과 미국 간에 체결한 주류협약(The Anglo-American Liquor Convention)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추적이 선박의 한 시간 항행거리 내에서 개시된 때에도 추적권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⁵⁴⁾

한편 영국과 미국 양국이 임명한 중재인들은 1935년 1월 5일 최종보고서

251) *Ibid.*, pp. 351-352.

252) G. G. Fitzmaurice, "The Case of the I'm Alone", *Th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17(1936), p. 82.

253) *Ibid.*, pp. 84-85.

254) 동 협약 제2조에서는 미국 연안으로부터 한 시간 항행거리 내에서 미국이 주류 밀수 단속을 위해 영국 선박을 임검·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를 제출하고 미 연안경비선이 위반혐의선박에 대한 승선, 검색, 나포 및 항으로의 예인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였다.²⁵⁵⁾ 그러나 동 사건에서 합동중재위원회는 국제법상의 추적권은 인정하나 추적권을 이유로 피추적선을 고의적으로 격침시킨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²⁵⁶⁾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상 무력사용에 관한 의무의 위반행위이므로, 미국 정부로 하여금 부당한 격침에 관하여 캐나다 정부에 사과하고 미화 25,000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침몰선박의 선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총 미화 25,666.50달러를 캐나다 정부에 지불하도록 권고하였다.²⁵⁷⁾

동 사건을 살펴보면, 경고 및 나포 목적을 위한 사격이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를 계속하려는 선박을 일시적으로 무능케 할 의도의 무력사용은 허용 가능하나, 추적대상선박의 고의적 격침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추적 중 사고에 의한 침몰의 경우에는 추적선박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알 수가 있다.²⁵⁸⁾ 또한 동 사건으로 인해 과거에는 국제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았던 외국선박의 불법어로 또는 불법거래행위 사건에서 무력사용을 한 국가는 강한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나. Red Crusader호 사건

(1) 사실관계

1961년 5월 29일, 영국 트롤어선 'Red Crusader'호가 영국과 아이슬랜드의 중간에 있는 페로스제도(the Faroe Islands) 연안에서 덴마크 당국에

255) 이용희,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146쪽.

256) William C. Denis, *op. cit.*, pp. 351-362 참조.

257) *Ibid.*

258) James W. Garner, "Hot pursuit Illegal Sinking of Vessel on the High Sea - The I'm Alone Case", *Th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16(1935), pp. 173-175.

의해 나포되었다. 당시 덴마크 어로보호선인 ‘Neils Ebbensen’호는 페로스 제도 해군으로부터 영국과 덴마크간 어업합의선의 덴마크측 수역에 네 척의 영국어선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진위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Thorshavn을 떠났다.²⁵⁹⁾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 구성된 사실심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Red Crusader’호 선상에는 어구가 올려져 있었고 저인망 그물로 실려져 있었다. ‘Neils Ebbensen’호는 불법어업을 하던 ‘Red Crusader’호를 발견하고 사이렌과 탐조등으로 수차례 정지신호를 보냈지만, ‘Red Crusader’호가 이를 무시하고 어구를 회수하자 ‘Neils Ebbensen’호는 40mm 공포탄을 발사하였다.²⁶⁰⁾ 공포탄 발사를 통한 강제 정선 후, ‘Neils Ebbensen’호의 관리가 임검을 위하여 ‘Red Crusader’호에 승선하였는데, ‘Red Crusader’호는 승선한 관리를 감금한 채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30분 뒤 ‘Neils Ebbensen’호가 127mm 포탄을 ‘Red Crusader’호의 선로(船艙)와 레이더시설, 조명 등에 발포하였으며, 40mm 포를 선미에 발사하였다. 이러한 사격은 ‘Red Crusader’호가 공해에 이르렀을 때 중지되었으며, 영국군함 ‘Troubridge’호가 양 선박사이에 개입하여 ‘Red Crusader’호는 영국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2) 판결 검토

1961년 11월 15일, 덴마크 정부와 영국 정부에 의해 동 사건에 관련된 나포와 그에 따라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사실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²⁶¹⁾ 사실심사위원회는 우선 ‘Red Crusader’호가 나포된 당시에는 영국과 덴마크간 어업합의선(blue line) 내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어업을 했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Red Crusader’호에 대한 수차례의 정선 신호는 어업합의선 외에 있을 때 행하여 졌음을 인정하였다.²⁶²⁾ 또한 ‘Red

259) The Red Crusader (Denmark v. U.K.), *International Law Reports*, vol.35(Cambridge: Grotius Publications Ltd.; London: Butterworth & Co., 1962), p. 493.

260) *Ibid.*, p. 494.

261) *Ibid.*, p. 485.

Crusader'호 나포 과정에서의 무력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보고서를 통하여 당시 별도의 수단에 의해 'Red Crusader'호를 정선명령에 응하게 하고 나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경고 없이 실탄사격을 한 점(firing without warning of solid gun-shot), ② 실탄사격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선 인원의 인명에 위해를 발생시켰다는 점(creating danger to human life on board the Red Crusader without proved necessity)에서 덴마크의 추적선이 '합법적인 무력 사용을 넘어섰다(exceeded legitimate use of armed force)'고 설명하였다.²⁶³⁾ 한편 동 보고서 제출 후 양 당사국은 각각 청구를 취소하고 사건을 해결하였다.²⁶⁴⁾

본 'Red Crusader'호 사건을 통하여서는 실탄사격전 반드시 실탄사격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과 실탄사격의 경우 그에 해당되는 사실의 확인이 없는 한 승선하고 있는 인명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다.²⁶⁵⁾

다. 제2차 사이가호 사건



(1) 사건 개요

사이가호 사건은 ITOLS가 설립된 이후 첫 번째로 담당한 The M/V "Saiga"(No.1) 사건(이하에서 '제1차 사이가호 사건'이라 함)과 The M/V "Saiga"(No.2) 사건(이하에서 '제2차 사이가호 사건'이라 함)으로 구분되어 각각 제1호, 제2호 사건으로 ITLOS 사건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그 중 '제2차 사이가호 사건'은 1998년 1월 13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요청에 의해 다루어진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절차와 1998년 2월 20일 교환문서를 통한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the

262) *Ibid.*, pp. 493-494.

263) *Ibid.*, p. 499.

264) D.P. O'Connell, *op. cit.*, pp. 1072-1073.

265) 이용희,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147-148쪽.

Grenadines)과 기니(Guinea)의 1998년 협정에 근거하여 회부된 본안(merits)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²⁶⁶⁾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은 1997년 11월 13일 유엔해양법협약 제292조²⁶⁷⁾에 근거하여 ITLOS에 사이가호와 선원들에 대한 신속한 석방을 요청하였고, ITLOS는 ‘제1차 사이가호 사건’의 판결을 통해 1997년 12월 4일 보석금을 정하고 석방명령을 내렸다.²⁶⁸⁾ 그러나 기니는 ITLOS의 명령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사이가호 선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은 1997년 12월 22일 기니의 사이가호 나포와 형사조치의 적법성을 묻기 위한 중재재판의 개시를 기니 측에 통보하고, 또한 1998년 1월 13일 ITLOS에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잠정조치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다.²⁶⁹⁾ 재판소는 1999년 3월 8일부터 20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심리를 통해 구두절차를 진행하고 평의를 한 후 1999년 7월 1일 ‘제2차 사이가호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²⁷⁰⁾

266) 홍성근, “제2차 엠/브이 사이가(M/V “Saiga”)호 사건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1998년 잠정조치 명령 및 1999년 본안 판결”, 「외법논집」, 제17집(2004), 271-272쪽.

267) 유엔해양법협약 제292조 선박·선원의 신속한 석방

1. 어느 한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억류하고 있고, 적정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금융 보증이 예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억류국이 선박이나 선원을 신속히 석방해야 할 이 협약 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 당사국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억류로부터의 석방문제는 당사국간 합의된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으며, 만일 그러한 합의가 억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287조에 따라 억류국이 수락한 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2. 석방신청은 선박의 기국에 의하여 또는 기국을 대리하여서만 할 수 있다.

3. 재판소는 지체 없이 석방신청을 처리하고, 선박과 그 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한 적절한 국내법정에서의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석방문제만을 처리한다. 억류국의 당국은 선박이나 승무원을 언제라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 재판소가 결정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금융 보증이 예치되는 즉시 억류국의 당국은 선박이나 선원들의 석방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한다.

268) 제1차 사이가호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근, “엠/브이 사이가(M/V “Saiga”)호 사건: 신속한 석방절차 사건(1997년 국제해양법재판소 판결)”, 「외법논집」, 제16집(2004), 369-390쪽 참조.

269) 홍성근, “제2차 엠/브이 사이가(M/V “Saiga”)호 사건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1998년 잠정조치 명령 및 1999년 본안 판결”, 272쪽.

270) 해양수산부,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Ⅱ」(서울: 해양수산부, 2004), 65-66쪽.

(2) 사실관계

이처럼 ‘제1차 사이가호 사건’과 ‘제2차 사이가호 사건’은 독립된 관할권을 성립시키는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그 원인된 사실관계는 동일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사이가호는 키프러스(Cyprus) 니코시아(Nicosia)의 Tabona 선박회사(Shipping Company Ltd.)가 소유하고 있었고, 스코틀랜드의 Seascot 선박경영회사(Shipmanagement Ltd.)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며, 스위스 제네바의 Lemanian 선박회사(Shipping Group Ltd.)에서 용선계약으로 사용하고 있었다.²⁷¹⁾ 사이가호는 1997년 10월 24일 세네갈의 다카르항을 떠나 10월 27일 이른 아침, 기니와 기니비사우(Guinea Bissau)간의 해양경계를 가로 질러 기니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하였다. 같은 날 04시와 14시 사이에 북위 10°25′03″와 서경 15°42′06″ 지점에서 세네갈 국기를 게양한 ‘Giuseppe Primo’호와 ‘Kriti’호, 그리스 국기를 게양한 ‘Eleni S’호 등 3척의 어선에 경유를 공급하였다.²⁷²⁾ 사이가호가 3척의 어선에 경유를 공급한 지점은 기니의 Alcatraz섬으로부터 약 22해리 정도 떨어진 기니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었는데, 이 3척의 어선은 기니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기니의 허락을 받고 있었다.²⁷³⁾

3척의 어선에 급유를 끝낸 사이가호는 기니의 배타적 경제수역 남쪽 한계 이남으로 항진하여, 새로 경유를 공급해주어야 할 어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1997년 10월 28일 04시 20분이래 표류하고 있었다. 같은 날 09시경 사이가호는 기니의 순찰선 P35와 P328 등에 의해 공격을 받은 뒤 나포되었다. 나포된 사이가호는 기니의 코나크리(Conakry)항으로 예인되었고 선박과 선원들은 그곳에 억류되었다.²⁷⁴⁾ 동 과정에서 기니 순찰선이 사이가호

271) 상게서, 35쪽.

272) *The M/V "Saiga"(No. 1) case,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 Judgement,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Judgement of December 1997, para. 29.

273) *The M/V "Saiga"(No. 2) case,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 Judgement,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Judgement of December 1997, para. 32.

274) *Ibid.*, para. 33.

를 정선시키기 위하여 대구경자동기관총을 선체에 대하여 발사하였으며, 정선 후 사이가호에 저항 없이 승선하여서도 선원들의 무력사용이나 무력사용의 위협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갑판에 사격을 가하고 엔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총기를 사용함으로써 2명의 선원이 부상하고 선체와 기관실 및 무선실의 주요 장비에 상당한 정도의 손상을 발생시켰다.²⁷⁵⁾

그 후 1997년 11월 1일, 부상당한 2명의 사이가호 선원들은 치료를 위해 꼬나크리를 떠나는 것이 허락되었고, 11월 10일과 12일에는 4,941.322톤에 달하는 사이가호의 적재 경유가 기니 당국의 명령에 의해 하역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선원 7명과 2명의 페인트공이, 12월 14일에 1명의 선원이, 1998년 1월 12일에 6명의 선원이 석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선장과 나머지 선원 6명은 1998년 2월 28일 사이가호가 억류에서 풀려날 때까지 꼬나크리에 남아 있었다.²⁷⁶⁾

(3) 판결검토



본 사건의 쟁점 사안 중 사이가호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와 나포 과정에서의 무력사용에 관하여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과 기니 양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추적권의 행사

우선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은 사이가호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기니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포를 할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기니 당국은 사이가호가 협약에 따라 추적을 정당화하는 죄를 범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

275) 해양수산부, 전게서, 122-124쪽.

276) *The M/V "Saiga"(No. 2) case*, para. 33.

하였다.²⁷⁷⁾ 또한 사이가호에 대한 추적이 사이가호가 기니의 접속수역 밖에 있을 때 개시되었다는 것에 주목하며, 사이가호가 기니 법령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1997년 10월 28일에 이루어진 나포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상 추적권의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²⁷⁸⁾ 나아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추적이 언제 어느 곳에서 개시되었든지 간에 중단되었으며,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추적 개시에 앞서 사이가호에 대해 어떠한 시각신호나 음향신호를 발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²⁷⁹⁾ 이러한 이유로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은 기니가 사이가호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추적권을 합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니는 동 협약 제111조 제8항에 따라 사이가호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니는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기니 당국은 사이가호가 기니의 관세 및 밀수법을 위반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얻은 후 즉시 추적을 개시하였으며 그 추적은 사이가호가 정선하여 나포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⁸⁰⁾ 기니 정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기니의 L/94/007 법²⁸¹⁾, 해상법²⁸²⁾, 관세법²⁸³⁾, 형법²⁸⁴⁾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

277) *Ibid.*, para. 139.

278) *Ibid.*, para. 140.

279) *Ibid.*, para. 141.

280) *Ibid.*, para. 142.

281) 기니 L/94/007법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조]

자연인이나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수입, 운반, 저장 그리고 배포는 기니 공화국에서는 금지된다.

[제4조]

법적 허가를 받은 것과는 다른 수단에 의해 연료를 주입하거나 주입을 시도하는 기니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어업허가권 소지자와 선박의 소유자는 징역 1년에서 3년 그리고 구입한 연료량 금액의 2배와 동등한 벌금에 처한다.

[제6조]

불법적으로 연료를 국내 영토로 수입한 자는 징역 6월에서 2년, 운송수단의 몰수, 이러한 범행이 3명 이하의 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불법적 수입품을 은닉하기 위해 사용된 품목에 대한 몰수, 그리고 불법적 수입품 금액의 2배와 동등한 공동 그리고 각각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이 법 제6조에 규정된 범죄가 6인 이상의 집단에 의해 행해진 경우, 그들이 불법

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제2항을 근거로 들며, 사이가호에 대한 추적을 사이가호가 여전히 기니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을 때인 1997년 10월 28일 이른 아침에 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⁸⁵⁾ 그리고 기니의 대형 순찰선인 P328호가 무선으로 사이가호에 대한 정지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호가 무시했으며, 소형 순찰선 P35 역시 사이가호에 음향신호가 시각 신호를 보냈었다고 주장하였다.²⁸⁶⁾

수입품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범법자들은 징역 2년에서 5년까지, 몰수된 품목 가치의 4배와 동등한 벌금, 이에 더하여 이 법 제6조에 규정된 추가 형벌에 처한다.

282) 기니 해상법 제40조

기니 공화국은 영해 한계로부터 188해리까지 확장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그 해상, 하층토, 해중의 천연자원, 생물이나 무생물에 대한 탐사, 개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경제적 목적으로 그 수역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

283) 기니 관세법 제1조 및 제34조

[제1조]

관세영역은 국가의 영토전체, 그리고 연안을 따라 위치해 있는 섬과 기니의 영해를 포함한다. 그러나 관세법령 전부 혹은 일부로부터 면제된 자유지역은 관세영역 내에 창설될 수 있다.

[제34조]

1. 세관의 활동영역은 해양수역과 육지부분을 포함한다.

2. 해양수역은 연안선과 그 연안으로부터 250km 해안에 위치해 있는 외측한계 사이에 있다.

284) 기니 형법 제361조 및 제363조

[제361조]

다음의 죄를 범하거나 은닉하거나 교사한 자는 징역 5년에서 10년,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의 몰수에 처한다.

1. 기니 농산물 및 공산품, 그리고 모든 형태의 제품에 대해 기니의 법정화폐인 통화의 부정한 수입이나 수출

2. 법적 허가를 받은 대리인을 통해서가 아닌 외국통화의 불법적 소유와 그러한 통화의 교환

3. 기니 수공업품이나 공산품인 마스크, 입상 그리고 기호품의 부정한 수입

[제363조]

경계선에서 밀수행위를 하는 현행범으로 발견된 범법자의 관습상 출두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범법자에 대한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사망이나 상해는 중한 죄 혹은 경한 죄가 되지 않는다.

285)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제2항에서는, 추적권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대륙붕시설 주변의 안전수역 포함)에서 이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이러한 안전수역 포함)에 적용될 수 있는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86) *The M/V "Saiga"(No. 2) case*, para. 143.

ITLOS는 사이가호에 대한 추적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몇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서 먼저 추적과 관련하여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 사이가호가 기니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기니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 이상의 어떤 혐의를 가질 수 없었고, 또한 그 상황에서 정지하라는 어떠한 시각신호나 음향신호를 사이가호에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게다가 기니가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기니가 주장한 계속된 추적은 오히려 중단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²⁸⁷⁾ 그리고 그 당시 선교에 있던 선장과 갑판에 있었던 선원의 진술 등을 통해 기니가 제시한 증거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제4항에 의해 요구되는 바대로 정선 명령에 필요한 음향신호나 시각신호를 사이가호에 대해 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하였다.²⁸⁸⁾

결국 ITLOS는 본 사건에서 기니의 추적권 행사의 법적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기니가 추적권 행사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이가호를 정선하고 나포하여, 그로 인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하였다.²⁸⁹⁾

(나) 무력사용

한편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은 사이가호를 정선시키고 나포함에 있어서 기니가 무력을 과도하고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기니는, 사이가호에 대해 정선을 명하는 무선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었고, 순찰선 P35호에서 시각신호와 음향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호가 정선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무기의 사용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였다.²⁹⁰⁾

287) *Ibid.*, para. 147.

288) *Ibid.*, para. 148.

289) *Ibid.*, paras. 149-150.

290) *Ibid.*, para. 154.

ITLOS는 우선 사이가호가 경유를 가득 싣고 최대 속도 10노트로 항진하던 비무장 연료보급선이었고, 이러한 사이가호에 대하여 기니 당국이 실제 탄약을 가지고 대구경 자동기관총(large-calibre automatic guns)으로 계속해서 사격을 가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²⁹¹⁾ 더불어 본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적용가능 한 국제법 규칙과 관련하여 나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비록 협약이 선박의 나포에 있어서 무력사용에 대해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 293조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은 무력사용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무력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력사용이 그 상황에 적당하고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²⁹²⁾ 이어서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적으로 인정된 신호를 사용하여 음향이나 시각정지신호를 보내고, 이것이 성공하지 않은 경우에 선박의 뱃머리 앞쪽을 향해 사격을 가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적절한 조치가 실패한 경우에만 추적선이 마지막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때에도 선박에 대해 적절한 경고를 보내야 하며,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²⁹³⁾

다음으로 ITLOS는 기니의 순찰선이 사이가호에 접근했을 때에는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기니의 기관원들이 별 어려움 없이 사이가호에 승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어떠한 신호나 경고조치도 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탄약으로 사이가호에 사격을 가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²⁹⁴⁾ 또한 기니의 기관원 역시 저항 없이 사이가호에 승선하였고, 선원들의 무력사용이나 위협에 대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판을 향해 사격을 가하고, 선박의 엔진을 정지시키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여, 그 과정에서 선박 파손과 인명부상을 가져왔다고 판단하였다.²⁹⁵⁾ 결국 이러한 이유로 ITLOS는 기니가 사이가호에 승선하기 이전과 이후에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하고 사람의

291) *Ibid.*, para. 153.

292) *Ibid.*, para. 155.

293) *Ibid.*, para. 156.

294) *Ibid.*, para. 157.

295) *Ibid.*, para. 158.

생명을 위태롭게 했으며, 따라서 국제법상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²⁹⁶⁾

3. 소결

해상 법집행과정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력사용 그 자체는 국제관습법적으로 정당한 법집행조치로서 인정되고 있지만 그 허용범위에 관한 당사국 간의 분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무력사용을 가한 국가들은 해당 법집행과정에서의 정당한 무력사용이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무력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무력사용의 과도함을 이유로 법집행국가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기관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해상 법집행과정에서의 무력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법집행국가가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정도에 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알 수가 있다.

우선 ‘제2차 사이가호 사건’에서 제시된 해상 법집행과정에서의 무력사용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살펴보면, 혐의선박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기 전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각·청각적 정지신호를 보내 해당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²⁹⁷⁾ 이러한 정선명령에 혐의선박이 불응한다면 해당 선박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뱃머리 앞쪽을 향해 사격을 가할 수가 있다.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사용은 정선 및 도주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력사용 전 혐의선박에 대해 적절한 경고를 보낼 것이 요구된다. 이는 ‘Red Crusader’호 사건에서 인명에 대한 실탄 사격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실탄

296) *Ibid.*, para. 159.

297) 국제만국신호규범(The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for All Nations)에 따르면, 거리 또는 대기의 상황이 국제신호깃발의 색깔을 구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뿔형 표지, 공, 드럼, 사각깃발, 페넌트, 직물표기, 고정식 연안신호기 등을 이용하여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Connel, *op. cit.*, p. 1072; 이용희,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149쪽, 주)73에서 재인용.

사격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한편 ‘Red Crusader’호 사건에서는 혐의선박을 정선시키거나 나포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상 법집행과정에서의 무력사용은 해당 법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써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취해진 무력사용의 경우라도 그 정도가 과도했을 경우에는 합법적인 무력사용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ITLOS는 이와 관련하여 ‘제2차 사이가호 사건’을 통해, 해상 법집행과정에서의 무력사용은 적정하고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혐의선박에 대한 경고 또는 나포의 목적을 위한 무력사용이나, 또한 해당 법집행조치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혐의선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정도의 무력사용만이 합법적인 무력사용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I’m Alone’호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피추적선을 고의적으로 격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법상 위반이기에 혐의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사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한·일 어업협정²⁹⁸⁾과 한·중 어업협정²⁹⁹⁾의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외국어선은 어획할당량(업종별, 어종별), 입어척수 등의 조업조건을 구비하고, 적법한 입어 및 조업절차에 의하여 어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조업을 할 수 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98) 한·일 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28일 서명되고, 1999년 1월 22일 발효되었고, 전문 및 17개조의 본문과 2개의 부속서, 그리고 합의의사록과 양측 외교부장관서한 등의 부속문서로 구성된다.

299) 한·중 어업협정은 한국과 중국이 1992년 8월 국교수립 이후 7년간에 걸친 어업협정 체결 교섭을 진행해 온 결과로서, 2000년 8월 3일 북경에서 서명되고 2001년 6월 30일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전문 및 16개조의 본문과 2개의 부속서, 그리고 양해각서(MOU)로 구성된다.

의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제62조)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2004년 이후 꾸준히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외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고 있다. 더욱이 이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불법조업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이 무기 등을 사용하며 폭력적으로 저항함으로써 인해 우리나라 해양경찰 및 해당공무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과 우리나라 해경 및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무력사용은 필요하며 이러한 무력사용은 이미 허용되고 있음은 주지한 바와 같다. 그러나 외국, 특히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인하여 무력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육상의 경우와는 다른 해상에서의 무력사용으로 오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에 따라 외교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무력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해어업자원의 보호를 위해 관련 주변국들이 합동순찰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해역에서 당사국들에 의한 국제협력으로 합동감시 및 단속, 정보공유 등을 수행하여 해상안전범죄 및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 등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북태평양 연안 6개국 해상치안기관이 모여 2000년에 결성한 해역 내 해상치안 및 안전 강화를 위한 협의체인 ‘북태평양 해상치안 기관장 회의(North Pacific Coast Guard Agencies Forum)’가 있다. 2009년에 10회째를 맞이한 이 회의에서는 6개국 해상치안기관이 밀입국, 불법어로 등 특별관심선박의 정보교류 추진 및 장래 정보교환시스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데 합의했다. 이외에도 해상치안 기관장들은 ① 북태평양의 밀입출국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강구, ② 북태평양 내 불법어로 방지를 위한 선박·항공기 정기적 순찰 및 단속 정보 공유, ③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해상테러대비 가이드라인 확립 및 선박 장거리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

가기로 합의했다.³⁰⁰⁾

다음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무력사용의 실효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해상에서의 무력사용은 육상에서와는 다른 해상의 특성으로 인해 오발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책임논란 및 외교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행사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은 별도의 독립적인 법령이 아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총기류의 사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자체적으로 ‘불법 외국선박 대응 매뉴얼’에 따라 선박을 검색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i) 안전 확보 후 단속 경찰관 승선,
- ii) 상대가 저항할 경우 전자봉, 가스총, 사과탄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기선 제압,
- iii) 승선 후 조타실 장악,
- iv) 흉기를 가지고 저항할 경우 1차 경고 후 불응 시 대퇴부 이하에 실탄 발사,
- v) 총기는 다른 진압 수단이 없을 경우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할 것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은 해양경찰청의 자체 내규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에 직접적인 법령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경찰관직무집행법과는 별도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집행조치 및 무력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해양경찰관직무집행법’의 신설 또는 해양경찰의 매뉴얼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관련 법령의 보완 등을 통해 해상에서의 법집행조치 및 무력사용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해상에서의 무력사용은 정당한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서 행해

300) “부산서 ‘태평양 해상치안’회의, 6개국 공조 합의”, 인터넷 연합뉴스, 2009년 9월 9일(방문일: 2009년 10월 14일).

졌다고 할지라도 그 절차 및 정도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무력사용이 아닌 합법적인 무력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의 국내법령 및 관련 국제사례들로부터 도출된 기준 및 절차, 정도에 관한 요건을 잘 준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정당한 무력사용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혐의선박의 법령위반 및 무력사용의 목적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제5장 결 론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연안국은 자국 관할수역에서 해당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 법집행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 국가 관할외측해역에서도 기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외국선박에 대하여 법집행조치를 행사할 수 있음은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법집행조치의 대상이 되는 해상 불법행위 중 폭력성을 띠는 해상 안전범죄(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해상테러행위)와 특정법령 위반 혐의 선박에 대한 해당국가의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대한 진압을 위해서는 좀 더 실효적인 법집행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1차적으로 이러한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이 허용되는 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국제법은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원칙적으로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해상 법집행과정에서 외국선박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 조치가 국제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력과 다른 성격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양 개념은 집행주체 및 수단의 동일성으로 인해 쉽게 구분하기가 힘들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엔헌장 및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과 관련사례들에서 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모두 ‘타국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또는 ‘유엔헌장의 목적’에 상반되는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일 경우 그 목적상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관련 국내법 및 협약 등에 근거한 법집행조치를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무력사용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양 개념은 무력을 행사하게 된 목적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하고, 이 경우 집행권자는 외국선박이 타국 관할해역에서 해당국가의 국내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 또는 국가관할외측에서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I'm Alone호 사건 이후 발생한 관련사례들에서의 재판소의 판결 및 당사국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해상 법집행조치로서 무력사용의 절차적

요건 및 사용 정도에 관해서만 다툼이 있을 뿐 무력사용 그 자체에 대한 분쟁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상 법집행과정에서의 무력사용은 이미 국제관습법상 정당한 조치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해상에서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서의 무력사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미약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무력충돌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³⁰¹⁾ 따라서 무력사용의 시점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의한 무력사용이 국제법상 허용하고 있는 무력사용의 기준 및 정도에 일치하여야 한다. 각국의 입법례 및 국제법의 태도를 통해 무력사용의 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집행과정에서 해당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거나 체포를 위한 경우 또는 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한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기 방어적인 수단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하여 최소한의 무력사용만이 인정된다.

해상에서 외국선박에 대해 무력이 사용되는 경우는 연안국 관할해역에서 연안국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고, 이에 연안국이 추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역시 무력사용의 요건 및 사용정도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나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나포건수는 200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불법 중국 어선들은 체포됐을 경우 많은 액수의 벌금 부과로 인해 생존차원에서 저항을 하고 있고, 실제로 2008년 우리나라 해양경찰 사망사건 이후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선원들의 저항 및 폭력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 또는 법집행을

301) 이용희,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150쪽.

행하는 해당 공무원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음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그 행사가 어려움에 따라 관련 법령의 보완 등을 통하여 무력사용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 국제사례를 통해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서 무력사용이라고 할지라도 절차 및 정도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국제법상 위반임을 알 수 있듯이, 혐의선박에 대해 우리나라가 무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선 법령위반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해당선박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정지신호를 보내야 한다.

둘째, 범죄혐의 선박이 정선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도 우선 선박의 뱃머리 앞쪽을 향한 사격을 가한 후에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선박이 불응하고 도주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셋째, 이러한 무력사용은 경고 또는 나포의 목적을 위하거나 해당선박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한 정도만 인정되고, 고의적으로 격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실탄사격 전에는 반드시 실탄사격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하며, 사람에 대한 무력사용은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거나 체포할 시, 또는 범인이 저항하여 법집행권자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에만 특히 신중하게 고려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인명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해상에서 국내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할 때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우 및 다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법집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의 절차적 요건과 “법집행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도에 관한 요건을 잘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합법적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선박의 국내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이에 따른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무력사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향후 과도한 무력사용이었다는 외국의 항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Guyana/Suriname’ case에서 비록 어떠한 무기의 사용도 없었고

총기 발사도 없었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지만, 동 사건에서 수리남 군함에 의한 조치가 국제법상 금지되고 있는 무력사용의 위협으로 판단된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하다. 즉, 집행주체만으로 무력사용의 성격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본 사건에서 중재재판소가 군함에 의한 조치를 단순한 법집행조치로 보지 않았다는 점은 군함이 행하는 임무의 목적을 법집행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처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군함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것으로 보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여 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포함하는 군함의 법집행조치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삼영사, 2009.

김정건, 국제법, 서울: 박영사, 2004.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서울: 박영사, 2006.

김선표 외, 유엔해양협약 이후 새로운 공해어업질서의 법적 성격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보고서, 2000.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서울: 21세기북스, 2004.

김현수, 국제해양법, 서울: 연경문화사, 2007.

이민효, 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 서울: 연경문화사, 2007.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서울: 일조각, 2003.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2002.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서울: 두남출판사, 2008.

최홍배 역, 山本草二, 海洋法, 국제해양법학회, 2002.

해양수산부,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Ⅱ, 서울: 해양수산부, 2004.

해양경찰백서, 해양경찰청, 2008.

2. 논문

강영훈, “잠수함의 국제법상의 지위”, 해양연구논총, 제12집, 1994.

김기재, 주요국가의 경찰상 무기사용에 관한 고찰, 비교법학연구, 제5권 2005.

김성희,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 독점금지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7.

김양수, “경찰관 총기사용에 관한 법적 검토”, 검찰 통권, 제115호, 2004.

김연태, “범죄진압장비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20집, 2004.

김자영, “해양법상 공해자유원칙의 현대적 의의”,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6.

김현수, “신해양법상 군사활동과 무력사용의 한계”, 해군전략, 제94호, 1997.

민꽃별, “해상안전범죄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2006.

박상희, “해양경찰법제정비의 기본방향”, 국제해양문제연구, 제18권 제1호, 2007.

박세용, “국제법상 형사집행관할권 행사의 보완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08.

박현진, “공해 어업과 공해상 승선검색절차”,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제1호, 2008.

_____,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미국의 국가실행”, 국제인권법, 제6호, 2003.

박희권,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 억제(SUA) 협약의 개정과 한국 외교”, 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 제2호, 2006.

신의기, “해상테러억제를 위한 로마협약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1호, 1998.

신창훈, “해상테러리즘의 규제와 방지에 관한 국제법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서울국제법연구, 제11권 제2호, 2004.

안치국, “공해상 승선검색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2008.

윤삼영, “경찰관 총기사용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7.

이용희,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해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9.

_____, “국적불명선 「장어 3705」호 침몰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1호, 2002.

장신, “국제법상 무력행사금지의 원칙과 자위권”,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2007.

전일수·노영돈, “해적방지를 위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해운물류연구, 제42호, 2004.

정대율, “2005년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의 국내 대응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2006.

지상원,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의 국내수용 방안”, 해사법연구, 제14권 제2호, 2002.

최석윤,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해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2006.

최종화, “WCPFC의 자원 보존관리조치 이행제도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2008.

홍성근, “제2차 엠/브이 사이가(M/V “Saiga”)호 사건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1998년 잠정조치 명령 및 1999년 본안 판결”, 외법논집, 제17집, 2004.

_____, “엠/브이 사이가(M/V "Saiga")호 사건: 신속한 석방절차 사건(1997년 국제해양재판소 판결)”, 외법논집, 제16집, 2004.

II. 동양문헌

山本草二 編, 海上保安法制, 東京: 三省堂, 2009.

III. 서양문헌

1. 단행본

Allen, C. H., *Maritime Counterproliferation Operations and the Rule of Law*, London: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2007.

Brownlie, Ian, *Public International Law*(6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Churchill, R.R. and Lowe, A.V., *The Law of the Sea*(3rd), United Kingdom: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Jennings, Robert & Watts, Arthur., *Oppenheim's International Law*(9th ed), vol.I, London: Longman Group, 1992.

Kwitakowska, *The 200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Law of the Sea*,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9.

Malanczuk, Peter,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4.

Nolan (ed.), J. R., *Black's Law Dictionary*, 6th, USA: West Group, 1991.

O'Connell, D.P.,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II, New York: Oxford Press, 1984.

Poulantzas, Nicholas M., *The Right of Hot Pursuit in International Law*, Hague; New York: Martinus Nijhoff, 2002.

The Red Crusader (Denmark v. U.K.), *International Law Reports*, vol.35, Cambridge: Grotius Publications Ltd.; London: Butterworth & Co., 1962.



2. 논문

Aldrich, G. H.,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Raised by the Seizure of the U.S.S. Pueblo”,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63, 1969.

Crook, John R., “Contemporary Practice of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Oceans, Environment, Health, and Aviation Law: United States Supports New Protocols Directed Against Use of Ships in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0, No.1, 2006.

Dennis, William C., “The Sinking of the I'm Alon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3, 1929.

Fitzmaurice, G. G., “The Case of the I'm Alone”, *Th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17, 1936.

Garner, James W., “Hot pursuit Illegal Sinking of Vessel on the High Sea – The I'm Alone Case”, *Th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16, 1935.

Gill, T. D., “The Forcible Protection, Affirmation and Exercise of Rights by States under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Netherlands Yearbook International Law*, vol.13, 1992.

Guilfoyle, Douglas., “Interdicting vessels to enforce the common interest: Maritime countermeasures and the use of forc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56, 2007.

Halberstam, Malvina., “Terrorism on the High Seas: The Achille Lauro, Piracy and the IMO Convention on Maritime Safet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2, 1988.

I. Bevans, Charles., “Contemporary Practice of the United States: Telegram from Secretary of State Rusk to all Diplomatic Posts, February 8, 1968”,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62, 1968.

Jose Luis Jesus, H.E., “Protection of Foreign Ships against Piracy

and Terrorism at Sea: Legal Asp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18, 2003.

Kaye, S.,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in the Maritime Domain”, *Israel Yearbook on Human Rights*, vol.35, 2005.

Kwast, Patrica Jimenez, “Maritime Law Enforcement and the Use of Force: Reflection on the Categorisation of Forcible Action at Sea in the Light of the Guyana/Suriname Award”,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Law*, vol.13, no.1, 2008.

Reuland, Robert C. F., “Interference with Non-National Ships on the High Seas: Peacetime Exceptions to the Exclusive of Flag State Jurisdiction”,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22, 1989.



Shearer, I.A., “Problems of Jurisdiction and Law Enforcement against Delinquent Vessel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35, 1986.

_____,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the Law Enforcement Roles of Navy and Coast Guard in Peacetime”,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71, 1998.

Soons, Alfred H. A., “Law enforcement in the Ocean-An Overview”, *WMU Journal of Maritime Affairs*, vol.3, no.1, 2004.

Quin, H., “Chinese Practice in Public International Law:2005(II)”,

Chinese Journal on International Law, vol.5, 2006.

Van de Velde, James R., “Neither Confirm nor deny, At Sea Still Alive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Naval Law Review*, vol.45, 1988.

IV. 기타 자료

1. UN 문서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7 September 1990.

UN Doc, A/61/63 9 March 2006.

UN Doc. S/RES/1851 16 December 2008.

UNGA, Resolution 34/169 1979.

2. 국제 판례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 v. Malta), ICJ Reports, 1985.

Guyana/Suriname Case, The Arbitral Tribunal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of the UNCLOS, Award of 17 September 2007.

Nicaragua case, (Nicaragua v. United States), ICJ Reports, 1986.

The Lotus case, (France vs. Turkey), PCIJ(Ser. A), No. 10, 1927.

The M/V "Saiga"(No. 1) case,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 Judgement,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Judgement of December 1997.
The M/V "Saiga"(No. 2) case,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 Judgement,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Judgement of December 1997.

3. 웹사이트

<http://www.gicomms.go.kr>

<http://www.imo.org>

<http://www.un.org>

4. 인터넷 신문

인터넷 동아일보 2008년 9월 29일자.

인터넷 연합뉴스 2009년 5월 26일자.

인터넷 연합뉴스 2009년 9월 9일자.

인터넷 헤럴드경제 2008년 10월 6일자.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Force against Foreign Ships for Maritime Law Enforcement at Sea

Jeong, Hee Je

Department of Maritime Law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Yong Hee

Ocean space is categorized into the area of 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coastal states and flag states in relation to cases, things and people at sea are various. In this connection, law enforcement such as the stopping, inspection and arrest of foreign vessels which have violated the domestic law in a coastal state's maritime jurisdiction can be taken by the state, and in case of exceptional cases, these are also acknowledged beyond the maritime jurisdiction.

With regard to whether the use of force against foreign vessels is made possible as a means of maritime law enforcement,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in the international law. The use of force against foreign vessels can incur not only diplomatic disputes but also even armed conflicts, so it is necessary to make a very cautious approach to this matter.

Furthermore, as the UN Charter bans the threat or use of force which means the use of military power,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one from the other in order to justify the use of force against foreign vessels.

In general, both the relevant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aws admit the use of force against foreign vessels as a means of maritime law enforcement, which is recognized by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bears recalling tha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firmed and applied the principles that the use of force in the law enforcement at sea may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and must not go beyond what is reasonable and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

In this context, if the dispute on the use of force against foreign vessels by South Korea should happen in the future, it will be highly recommended to give consideration on humanity and collect evidences necessary for proof of legitimation of the act in the course of the use of force.

Based on the afore-mentioned factors,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Chapter I introduces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study.

Chapter II reviews the international legal grounds and the attitude of domestic laws against the maritime jurisdiction at sea.

Chapter III distinguishes the use of force at maritime law enforcement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which is provided in the UN charter, and analyzes the character of the use of force at maritime law enforcement.

Chapter IV reviews the requirement of the use of force at maritime

law enforcement and international cases concerned, and suggests South Korea's response.

Chapter V, as a conclusion, describes the result of this study.

